

201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 업 설 명 자 료

(무역투자실)

2014. 1.



산업통상자원부

201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무역투자실)

2014. 1

산업통상자원부

목 차

1. 무역정책관 1

<일 반 회 계>

- 1) 국내전시회 지원사업(계속) 7
- 2) 2015밀라노세계엑스포 한국관 참가(신규) 17
- 3) 전략물자수출통제기반구축(계속) 24
- 4) 지역전문가 양성 및 공급(계속) 38
- 5) 대한상사중재원지원사업(계속) 46
- 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계속) 52
- 7) 중소중견기업수출경쟁력강화(계속) 60
- 8) 무역보험기금출연(계속) 68
- 9) 통합무역정보서비스 기반구축(계속, 정보화) 77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 10) 지역산업마케팅지원(제주)(계속) 91

2. 투자정책관 97

<일 반 회 계>

- 1) 해외진출기반구축(계속) 103
- 2) 남북산업자원협력(계속) 109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 3) 투자유치기반조성(계속) 117
- 4) 투자유치기반조성정보화기반구축(계속) 125
- 5) 투자유치기반조성(제주) (계속) 130

3. 통상국내대책관 135

<일 반 회 계>

- 1) 통상협정 국내대책추진지원(계속) 141

무역정책관

무역정책관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감 (B-A)	%
<일반회계>	265,375	517,528	422,428	94,882	18.3
○ 국내전시회 지원사업	6,085	8,407	7,381	△1,026	△12.2
○ 2015밀라노세계엑스포 한국관 참가	-	-	6,700	6,700	순증
○ 전략물자수출통제기반구축	3,560	4,009	4,859	850	21.2
○ 지역전문가 양성 및 공급	4,087	3,262	4,062	800	24.5
○ 대한상사중재원지원사업	800	1,100	1,100	-	-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93,298	215,600	216,008	408	0.2
○ 중소기업수출경쟁력강화	26,345	34,000	40,581	6,581	19.4
○ 무역보험기금출연	30,000	250,000	140,000	△110,000	△44.0
○ 통합무역정보서비스 기반구축사업(정보화)	1,200	1,150	1,737	587	51.0
<광특회계>	300	270	379	109	40.4
○ 지역산업마케팅지원(제주)	300	270	379	109	40.4
【 합 계 】	265,675	517,798	422,807	94,991	△18.3

일 반 회 계

국내전시회 지원사업(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국내전시회 지원	6,085	8,407	7,381	△1,026	△12.2

* 사업코드 : 21-11-0-110-113-1100-1131-301

* 담 당 자 : 무역정책국장(남기만), 무역진흥과장(황병소, 044-203-4030), 사무관(김상곤, 044-203-4034)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0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민간경상보조 (정액보조)
사업시행주체	(사)한국전시산업진흥회

2. 사업목적

☐ 국제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전시회 육성

- 국제비즈니스와 교류의 장소로서 해외바이어가 찾아오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전시회 육성

☐ 중소기업의 해외수출 마케팅 기회 제공

- 국내 유망전시회 개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에 효과적인 수출마케팅 기회 제공

3. '14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Global TOP 전시회 지원 : 1,300백만원

- 세계 10권내 경제규모에 적합한 브랜드 전시회의 집중 육성으로 국내전시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 산출내역

▷ Global TOP 전시회 : 4개 × 325백만원 = 1,300백만원

- * '09년 10개 ⇒ '10년 8개 ⇒ '11년 5개 ⇒ '12년 4개 ⇒ '13년 4개 Global TOP 수준의 전시회 육성

- * 해외바이어 2,000명 이상(전년 1,800명 이상) 유치가 가능한 전시회의 육성을 위해 집중 지원

○ 국내전시회 개최지원 : 4,469백만원

- 해외인지도가 높은 우수전시회 및 유망전시회에 대해 해외바이어 유치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수출상담 기회제공 강화

- * 전시회는 '01년 221개 → '12년 560개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이며, 상위 10% 수준의 전시회에 해외바이어 초청 지원

▪ 산출내역

▷ 유망전시회 : 55개 × 51.1백만원 = 2,809백만원

- * '13년 53개 × 53.72백만원 = 2,847백만원

- * 전시면적 및 해외바이어 참가자 규모에 따라 30 ~ 70백만원 차등 지원

▷ 합동·통합전시회 : 2개 × 30백만원 = 60백만원

- * '13년 1개 × 30백만원 = 30백만원

- * 합동·통합전시회는 유망전시회 중 전시회의 합동 및 통합 개최를 통해 규모를 대형화한 전시회에 대하여 인센티브 부여

▷ GTI(Greater Tumen Initiative) 전시회 : 900백만원

- * 동북아 지역 개발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가 참여하는 순회전시회 지원

- * 중·러의 동해 출구전략 대응 및 동북아 신흥시장 선점으로 무역·투자 확대

▷ 헬스IT융합전시회 : 700백만원

- * 고부가가치 산업인 Health와 IT분야 융합된 신규전시회에 전략적 지원

- * ITU 전권회의(2014. 10월)와 연계, 한국의 우수한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병원·의료시스템 및 U-Health·Wellness 기술 수준 홍보와 이를 통한 수출활로 개척

○ 국내전시 기반 육성사업 : 875백만원

▪ 산출내역

- ▷ 전시전문인력 양성센터 : 석·박사과정(80백만원)+최고위과정(30백만원)+전문가과정(30백만원)+신입과정(30백만원)+업무역량향상특강(40백만원) +프로그램 운영프로그램 운영(40백만원) = 250백만원
 - * 전시산업 석·박사 학위과정, 최고위과정, 전문가과정, 전시입문과정 등 전문적인 이론과 현장실무 능력을 겸비한 전문인력 양성
- ▷ 국제협력 : 해외 주요 전시단체 협력관계 강화(50백만원)+IAEE 등 전시산업 국제회의 참석(40백만원) = 90백만원
 - * 해외전시산업의 동향파악 및 국내 전시산업의 국제화 촉진
 - * 해외 유관기관 총회 참가를 통한 국내전시산업의 인지도 제고 및 UFI 총회 개최 후 성과관리 활동 강화
- ▷ 제3회 동북아 전시 공동시장 조성협력 : 통역 및 인쇄물 제작(10백만원) +행사장 조성(20백만원) = 30백만원
 - * '10년. 6월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 강화 위원회 주재 '전시·회의산업 발전방안' 보고사항의 동북아 전시·회의 중심축 구축을 위한 신규사업
 - * 한·중·일의 전시산업 주요 실무자의 동북아시아의 전시 공동시장 개발을 위한 실행방안 논의로 3국의 순회 교차 개최
 - * 1회 개최 : 한국 서울, 2회 개최 : 중국 해남, 3회 개최 예정: 한국 제주
- ▷ 국내 전시통계 : 전시 통계조사(30백만원) = 30백만원
 - * 국내 전시산업의 현황파악과 발전전략 수립 등 정책개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전시산업 통계 조사 사업
- ▷ 전시포털 관리운영 : 포털사이트 보안강화, 고도화 및 모바일 연동작업(110백만원)+전시포털 사이트 유지보수(70백만원) = 180백만원
 - * 글로벌전시포털(GEP) 사이트의 보안강화 요청에 따른 망분리 및 고도화 작업을 통한 국내전시산업 지원 효율화
- ▷ 제11회 아시아전시포럼 : 해외연사 초청비(45백만원)+자료제작(20 백만원)+행사장 조성(25백만원) = 90백만원

- * 해외 전시산업 트렌드 소개 및 국내 전시산업 발전방향 제시 등을 위한 아시아 최대의 전시포럼

▷ 전시사업자 교육 : 전시주최자교육(30백만원)+참가업체교육(20백만원) +장치·서비스교육(20백만원)+바이어통역사교육(15백만원)+독일전시회 마케팅교육(35백만원) = 120백만원

- * 전시산업 종사자의 단기 보수교육 및 국제 공인자격증 취득기회 제공
- * 전시회 참가업체의 전시참가 효과 극대화 교육
- * 해외바이어의 원활한 비즈니스 상담을 위한 통역업무 관련 교육
- * 전시선진국(독일)의 전시마케팅 Tool 실무교육 및 교육 프로그램 적용

▷ 전시사업자 전산화 등록 : 4개 단체 × 8.7백만원 = 35백만원

- * 전시주최자(약 150업체), 전시장치사업자(약 700업체) 및 전시서비스업자(약 450업체) 등록, 갱신 및 정비 등의 대행 업무관리 지원

▷ 제 6회 대한민국 전시산업 대전 : 바이어 초청경비(20백만원) + 해외 마케팅(10백만원) = 30백만원

- * 전시산업계의 모든 사업자가 참여하여 무역증진 및 기업마케팅 수단으로서 전시회 인식제고와 미래의 트렌드를 제시하는 산업대전 지원

▷ 전시기획서 및 디자인 공모전 : 전시기획서 공모전(10백만원) + 전시디자인 공모전(10백만원) = 20백만원

- * 국내 전시산업 발전을 위한 인재양성 기반구축 및 산학연계를 통한 전시산업 관심도 및 참여의식 제고, 디자인 분야 활성화 촉진

○ 전시산업 · 전시회 홍보사업 : 287백만원

▪ 산출내역

▷ 국내 우수전시회 해외로드쇼 : 현지 로드쇼 진행비(80백만원)+홍보물 제작(12백만원)+에이전트 운영(10백만원) = 102백만원

- * 해외 주요지역에 국내 유망전시회의 로드쇼 개최와 해외바이어 초청을 위한 현지 컨설턴트 운영으로 경쟁력 있는 국내전시회의 국제화 촉진

▷ 전시저널 발간 : 6회(격월) × 10백만원 = 60백만원

- * 국내 전시산업의 유일 종합정보지 발간 및 국내·외 배포를 통하여 해외 및 국내 전시산업의 다양한 정보제공과 해외 홍보강화

▷ 글로벌 전시회 국내전시산업 홍보 : 2회 × 30백만원 = 60백만원

- * 글로벌 해외 우수전시회의 홍보부스 설치로 한국의 전시산업 홍보 및 해외바이어 정보 획득 후 관련 국내 전시업계 제공

▷ 전시산업 디렉토리 제작 지원 : 3회 × 11.6백만원 = 35백만원

- * 국내 전시산업 단체(주최자·장치·서비스사업자)의 디렉토리 제작, 배포

▷ 전시장 홍보물 제작 : 1회 × 10백만원 = 10백만원

- * 국내전시장에 대한 홍보물 제작을 통해 국내전시산업 인프라 소개 및 해외 공동홍보 강화

▷ 해외 유명 전시미디어 광고 : 4회 × 5백만원 = 20백만원

- * 해외 전시 관련 유명 매체에 한국 전시산업 광고 게재

○ 국내전시회 평가관리 사업 : 450백만원

▪ 산출내역

▷ 전시회 평가 : 55개 전시회 × 1.4백만원 = 80백만원

- * '13년은 60개 전시회 × 1.4백만원 = 81백만원

- * 국고지원전시회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 및 관리로 국내 전시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유기적 피드백으로 전시회 발전에 기여

▷ 전시회 지원사업 관리 : 12개월 × 27.5백만원 = 330백만원

- * 국내전시회 지원사업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통해 국내전시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 추구
- * 전시회 현장실태조사 출장, 차년도 전시회 선정, 전시사업자 등록증 제작, 업무협약 등 포함

▷ 전시산업 발전과제 용역 : 1건 × 40백만원 = 40백만원

- * 국내 전시산업의 제도개선을 위한 용역 수행(전시 참가업체 ROI 분석 등)

□ 지원 필요성

○ 국제경쟁력을 갖춘 Global TOP 전시회 지원 등 전시산업 육성을 통해 수출증진에 기여

- * 국내 무역전시회에 해외바이어가 찾아오는 전시회육성 지원으로 '12년 해외 참가업체 3,641개사, 해외바이어 42,258명, 수출계약액 33억불 달성

- 세계 각국의 전시컨벤션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과 투자에 대한 대응으로 국내전시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필요
 - * 중국은 제12차 5개년 경제계획에서 전시회를 통해 관련 산업의 발전과 지역의 산업구조 개선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지원방안의 하나로 전시산업의 경쟁력 강화 추진
- 전시회는 중소기업의 세계시장 개척을 위한 최강의 마케팅 수단
 - 미국, 독일, 일본 등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중소기업마케팅 지원을 위해 국내전시회 개최 지원
 - * 절삭공구 업체 'YG-1'의 세계시장 점유율 : 엔드밀 1위, 탭 2위, 드릴 6위
 - * 'YG-1'는 서울국제공작기계전 참가로 독일에 수출시장을 개척함으로써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아 70개국 이상에 수출을 하는 강중소기업으로 도약(2010년 10월 8일 조선일보에 소개)
- 전시산업은 영화산업의 규모로 성장하고 있으며, 해외바이어 방문을 통한 외화가득효과 및 일자리창출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
 - * 취업유발효과 : 전시회(39.0), 전기·전자(8.9), 일반기계(16.2) (무역협회)
 - * 해외바이어의 1인 평균지출은 2,488US\$로 일반 외국인관광객의 3배
- 해당산업의 신제품과 새로운 기술에 대한 비교전시 기회제공으로 해당분야의 기술개발 촉진을 통해 산업발전을 위한 기술교류의 장 제공
 - * KIMES(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의 국제화는 의료기기 기술교류의 장 제공으로 국내 의료기기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토대 마련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 국내전시회 지원	6,085	8,407	7,381	△ 1,026	△ 12.2
▪ Global TOP 전시회	1,350	1,360	1,300	△ 60	△ 4.4
▪ 국내전시회 개최지원	3,227	3,777	4,469	692	18.3
▪ 국내전시 기반육성	805	655	875	220	33.6
▪ 전시산업 홍보사업	267	227	287	60	26.4
▪ UFI 총회 개최사업	-	400	-	△ 400	△ 100
▪ 국내전시회 평가사업	436	471	450	△ 21	△ 4.5
▪ KINTEX 건립지원	-	1,517	-	△ 1,517	△ 100
☐ 비목(합계)	6,085	8,407	7,381	△ 1,026	△ 12.2
○ 세목명(세목번호)	6,085	8,407	7,381	△ 1,026	△ 12.2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중소기업의 수출마케팅 지원강화를 위해 해외바이어가 찾아오는 세계적 수준의 Global TOP 전시회 등 우수전시회 육성
- 2020년 무역규모 2조불 달성 및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수출 마케팅 활동 지원 강화
- 국내전시회 개최지원 : 해외바이어 및 업체가 찾아오는 국제수준의 전시회 육성을 위해 우수전시회에 바이어유치비, 해외마케팅비 등 지원
- Global TOP 전시회 지원 : 국제적 수준의 Global TOP 전시회를 3~5개 육성하기 위해 집중 지원
- 사업평가·관리 및 무역전시 기반 조성 : 국비지원 국내전시회 사업 성과의 체계적 평가·관리체계 구축
- Global TOP 및 주요 전시회의 홍보, 인력양성, 해외바이어 DB구축 등 무역전시 기반구축 사업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3	84.07	Global TOP 전시회 13.6억원 (5개×2.72) 국내전시회 37.7억원 (55개×0.69) 전시산업 기반구축 13.53억원 UFI 총회 개최 4억원 KINTEX 건립지원 15.17억원
'14	73.81	Global TOP 전시회 13억원 (4개×3.25) 국내전시회 개최 44.69억원 (59개×0.75) 전시산업 기반구축 16.12억원
'15	45.51	Global TOP 전시회 9억원 (3개×3) 국내전시회 개최 24억원 (40개×0.6) 전시산업 기반구축 12.51억원
'16	45.51	Global TOP 전시회 9억원 (3개×3) 국내전시회 개최 24억원 (40개×0.6) 전시산업 기반구축 12.51억원
'17	45.51	Global TOP 전시회 9억원 (3개×3) 국내전시회 개최 24억원 (40개×0.6) 전시산업 기반구축 12.51억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전시산업발전법 제21조 :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예산범위내 지원
 1. 전시산업 수요조사
 2. 전시산업 기반조성 사업
 3. 국내전시회 및 전시회 부대행사 개최
- 1차 무역투자진흥회의('08.5.16) : Global TOP 전시회 육성 및 전시장 확충의 필요성을 VIP께 보고
- 2차 무역투자진흥회의('08.11.4) : 국내전시회, 상담회 등 해외 유력 바이어 유치를 통한 수출지원 확대를 VIP께 보고
- 제2차 수출대책위원회 회의('09.11.30) : 해외바이어가 찾아오는 무역 전시회 육성을 VIP께 보고

○ 추진경위

- '98년 무역전시산업육성방안 기본계획 수립, '00년부터 정부지원
- '03.4월 국내전시회 지원 및 평가관리 강화 VIP께 보고(무역진흥확대회의)
- '04.6월 전시산업 경쟁력강화 대책 확정·발표(경제장관간담회)
- '05.4월 VIP 전시·컨벤션산업 국가전략산업 육성 표명(KINTEX 개장식)
- '08.5월 Global Top 전시회 육성 및 전시장 확충의 필요성을 VIP께 보고(1차 무역투자진흥회의)
- '08.11월 국내전시회, 상담회 등에 해외유력바이어 유치를 통한 수출지원 확대를 VIP께 보고(2차 무역투자진흥회의)
- '08.12월 '전시산업발전법' 제정·시행('08.9.22)에 따른 '전시산업발전 기본계획(5년)' 확정·발표
- '09.11월 해외바이어가 찾아오는 무역전시회 육성 필요성을 VIP께 보고(제2차 수출대책위원회 회의)

- '10.6월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전시·회의산업 발전 방안' 확정 및 보고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 국내전시회 지원	52.85	52.85	60.85	84.07	73.81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0년	52.85 (52.85)	- (-)	- (-)	52.85 (52.85)	52.85 (52.85)	- (-)	- (-)
'11년	52.85 (52.85)	- (-)	- (-)	52.85 (52.85)	52.85 (52.85)	- (-)	- (-)
'12년	60.85 (60.85)	- (-)	- (-)	60.85 (60.85)	60.85 (60.85)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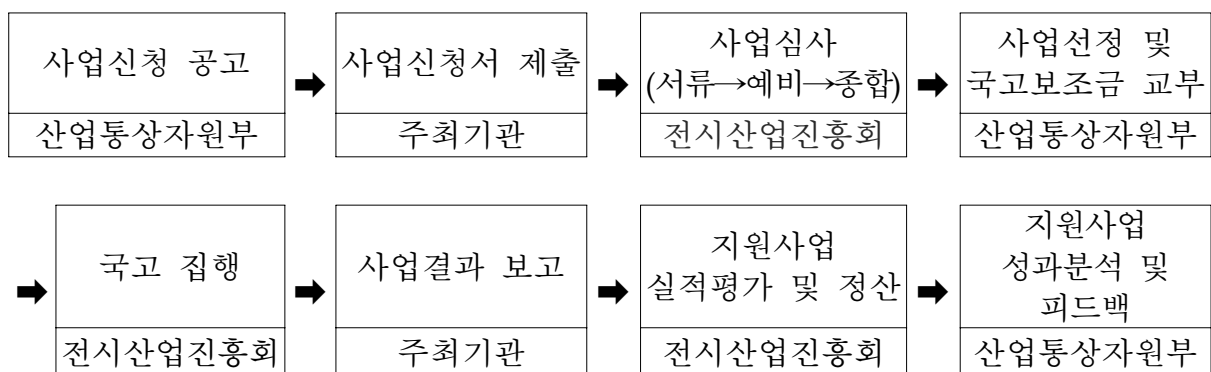
- 국내전시회 (예결위 '09 예산 검토의견)
 - 국내전시회의 실질적인 지원 강화 방안 모색 필요
- 국내전시회 (예결위 '11 예산 검토의견)
 - Global TOP 전시회 등 국내전시회 개최 지원사업 실행시 전시회 수나 개별 전시회의 지급액 변동 폭 최소화
- 국내전시회 (예결위 '13 예산 검토의견)
 - 소액 다건 방식의 전시회 지원사업 지양 필요. 동 지적에 따라 '14년 국고지원 전시회 선정 시 예산계획 대비 선정건수 축소 예정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무역전시회 지원은 무역촉진 활동으로 분류되어 WTO 체제하에서도 지원이 가능하여 각국의 정부는 자국의 수출증대를 위해 경쟁적으로 전시회에 대한 지원확대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

국 가	지 원 내 역
홍 콩	매년 교역 신고부담금에서 얻은 수익금을 일종의 지원금 형태로 준정부 기관인 HKTDCE에 교부하여 동 기관이 년 130억원 수준의 국내전시회를 개최지원
대 만	국내전시회에 해외바이어 초청을 위하여 건강검진 보조, 숙박 및 항공 운임의 제공
영 국	산업부에서 전략적 육성산업을 위한 전시회에 해외바이어 초청 비용의 1/2을 지원하고 관련업계 비즈니스 미팅 기회 제공
독 일	전시회 참가업체의 참가경비에 대한 부가세를 감면해 주고 있으며, AUMA(독일전시협회)를 통해 해외마케팅 활동을 지원
미 국	국내 유망전시회를 선정하여 상무부 FCS 조직을 활용, 전시회 홍보 및 바이어 유치활동을 적극 지원
프랑스	지방정부나 상공회의소 등이 통상활동 촉진정책의 일환으로 전시회 참가경비의 일부를 지원
싱가포르	일류 국제전시 도시로 육성을 위한 IEC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며, 인증 전시회에 대한 이중과세 감면 및 소득세 감면혜택 부여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 해당없음

2015밀라노세계엑스포 한국관 참가(신규)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2015밀라노세계엑스포 한국관 참가	-	-	6,700	6,700	순증

* 사업코드 : 21-11-0-110-113-1100-1131-304

* 담당자 : 무역정책관(남기만), 무역진흥과장(황병소, 044-203-4030), 사무관(권주현, 044-203-4035)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4.1월 ~ ‘15.12월
총사업비	총 215억원
사업규모	한국관 3,800㎡ 내외 건립 및 운영
지원조건	보조
사업시행주체	KOTRA

2. 사업목적

- ☐ 2015 밀라노 세계엑스포는 등록엑스포로 국가 브랜드를 효과적으로 홍보하여 국격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전략 프로젝트

* 우리나라는 70년대 이후 개최된 모든 엑스포(17회)에 국가관으로 참가

- 금번 엑스포 주제인 ‘식량과 에너지’와 관련하여, 전통 산업인 농업과 첨단 분야인 ICT 기술을 접목한 융복합 창조 경제 모델 확립의 계기 마련

3. '14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한국관 조성 : 6,200 백만원
 - 한국관 시공을 위한 공사 비용 : 5,150백만원
 - * 밀라노 한국관 조성 예산 22,144백만원의 24% 수준 배정
 - * 국가관 시공 패키지 프로그램 이용을 위한 최소 예산 확보 필요(조직위 제공 시공패키지1: 가설 및 터파기 공사, 패키지2: 패키지1+지반공사, 패키지3: 철거 및 지반복원 공사)
 - 영상물 제작 기업 선정 및 발주 : 1,050백만원
 - * 시나리오작성, 1차 제작 및 시연 (총 예산의 약 20% D-1년도 집행)
- 문화행사 : 300 백만원
 - 한국관 기공식 행사 130백만원
 - * 행사시스템구축(무대,음향,LED,발전차) 50백만원, 관련행사 제반 경비 50백만원
 - * 광고선전비 30백만원
 - 웹사이트 개설 및 운영 : 170백만원
 - * 3D한국관 사이버 전시관 운영, 3개국어 홈페이지 제작, 서버 임차료 등
- 전담반 운영 : 200백만원
 - 지급수수료 : 123백만원
 - * 용역채용 108백만원(3명×3백만원×12개월), 자문운영 15백만원(3백만원×5회)
 - 업무추진비 : 12백만원
 - 전담반 운영비 : 63백만원
 - * 통신비 0.5백만원×12개월, 소모품비 0.5백만원×12개월, 교통비 0.5백만원×12개월
 - 홍보용품 제작 및 도서인쇄비 : 2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식량, 농업이 주제인 금번 엑스포를 활용하여 전통 산업인 농업과 ICT 기술을 융합하여 새로운 성장 산업의 미래를 열고, 다양한 분야의 인재 교류를 통해 창조 경제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밀라노 엑스포 조직위는 우리나라의 첨단 ICT기술에 기대하고 있으며, ICT기술을 통한 메시지 전달의 한국 역할을 요청한 바 있음('13.7.19 참가계약 체결식)

- 엑스포를 활용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EU지역 수출 확대의 계기 마련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 2015밀라노세계엑스포 한국관 참가	-	-	6,700	6,700	순증
▪ 한국관 조성	-	-	6,200	6,200	순증
▪ 문화행사 / 홍보	-	-	300	300	순증
▪ 전담반 운영	-	-	200	200	순증
☐ 비목(합계)	-	-	6,700	6,700	순증
○ 민간경상보조(320-01)	-	-	6,700	6,700	순증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전통 산업과 첨단 기술의 융·복합을 통한 엑스포 주제 구현
- K-Food, 한류 등 문화 강국 이미지 구축 등 국격 제고의 기회로 활용
- 韓-EU 교류 확대 계기 마련 및 창조 경제 실현을 위한 플랫폼 구축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3	-	
'14	67	한국관 조성 62(한국관 시공 51.5, 영상물제작 등 10.5) 문화행사 3(기공식 등 행사 1.3, 웹사이트 개설 및 운영 1.7) 전담반 운영 2
'15	148	한국관 조성 98, 문화행사 27 전시관 운영 20, 전담반 운영 3
'16	-	
'17	-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 5조 : 무역거래기반 조성(무역전시산업육성) 및 무역 전시회의 참가 지원 등을 규정

○ 추진경위

- 2011.12월 국무총리 보고 및 참가결정 (국무총리 결재)
- 2012.1. 5 2015밀라노엑스포 한국관 참가 통보
- 2012.4.19 외교부, 이탈리아 대사관에 한국관 정부대표(KOTRA 사장) 통보
- 2013.6.13 대외경제장관회의 안건 상정
- 2013.7.19 참가계약식 체결(한국관 부지면적 3,880m² 확정)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 2015밀라노세계엑스포 한국관 참가	-	-	-	-	67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2015밀라노세계엑스포 전 세계 138개국 참가 예정 ('13.11월 기준)
- 밀라노 엑스포 국가관 대형부지(2,900m²이상)는 총 12개 국가
 - * 독일(4,913m²), 중국(4,590m²), 스위스(4,433m²), UAE(4,386m²), 사우디(4,170m²), 일본(4,170m²), 러시아(4,170m²), 브라질(4,133m²), 한국(3,880m²), 프랑스(3,592m²) 순

(5) 사업추진절차

- 2014년 : 시공사 선정(2월), 행사 및 운영 용역대행사 선정(4월), 한국관 기공식, 전시물 제작(5월~), 영상물 제작(6월~), 한국관 완공 및 준공(12월)
- 2015년 : 한국관 시운전(4월), 한국관 개관 및 운영(5.1~10.31), 한국관 철거('15. 11월~)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 2015 밀라노세계엑스포 개요 및 역대 세계엑스포 한국관 참가 현황 (참고자료 1, 2)

참고 1

2015 밀라노 엑스포 개요

- ☐ 명 칭 : 2015 밀라노세계박람회
(World Exposition Milano 2015, Italy)
- ☐ 기 간 : 2015. 5. 1 - 10. 31일 (총 6개월)
- ☐ 성 격 : 세계박람회기구(BIE) 공인 엑스포로 매 5년 마다 개최되는
등록 엑스포(Registered Expo)
- ☐ 개최지 : 이탈리아 밀라노 (밀라노 북서쪽 Rho-Fiera 신전시장 부지)
- ☐ 면적 : 110만km²
- ☐ 투자규모 : 총 27억 유로(3조 8,800여억원)
- ☐ 주 제 : "지구 식량공급, 생명의 에너지"
(Feeding the Planet, Energy for Life)

<소주제>

- 식품 안전 및 품질에 관한 과학과 기술
- 농업과 생물다양성을 위한 과학과 기술
- 농·식품 유통혁신
- 식생활교육
- 더 나은 라이프 스타일을 위한 식품
- 식품과 문화
- 식품관련 협력과 발전

- ☐ 참가규모 : 130여개국 국가 및 국제기구, NGO 단체 등 참가 예정
- ☐ 방문객수 : 약 2,000만명 예상

참고 2

역대 세계엑스포 한국관 참가 현황

연도	개최지	성격	주 제	한국관 규모(㎡)	참가예산 (백만원)
'62	시애틀(미국)	종합	우주시대의 인류	326	-
'67	몬트리올(캐나다)	종합	인간과 그의 세계	423	-
'70	오사카(일본)	종합	인류의 진보와 조화	3,495	1,219
'74	스포케인(미국)	전문	공해없는 발전	767	279
'75	오끼나와(일본)	전문	바다 - 그 바람직한 미래	496	365
'82	낙스빌(미국)	전문	에너지가 움직이는 세계	1,920	1,929
'84	루이지애나(미국)	전문	강의 세계	1,472	1,687
'85	쓰꾸바(일본)	전문	인간의 생활환경과 과학기술	1,665	1,691
'86	벤쿠버(캐나다)	전문	움직이는 인류 - 교통과 통신	1,587	1,916
'88	브리스베인(호주)	전문	기술시대의 레저	1,445	2,077
'92	세비야(스페인)	종합	발견의 시대	2,400	5,963
'92	제노아(이태리)	전문	배와 바다	600	693
'93	대전(한국)	인정	새로운 도약에의 길	15,418	46,400
'98	리스본(포르투갈)	인정	바다, 미래를 위한 유산	1,296	8,858
'00	하노버(독일)	등록	인간-자연-기술	3,700	11,220
'05	아이치(일본)	등록	자연의 지혜	1,620	9,119
'08	사라고사(스페인)	인정	물과 지속가능한 개발	1,550	9,500
'10	상해(중국)	등록	아름다운 도시, 행복한 생활	7,683	38,251
'12	여수(한국)	인정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	5,248	96,752

* 등록박람회 및 인정박람회

구분	등록박람회(Registered EXPO)	인정박람회(Recognized EXPO)
주 제	광범위한 주제 * '96년 이후 제한적 주제도 가능	명확한 주제
개최기간	6주~6개월	3주~3개월
개최주기	매5년	등록박람회 사이 1회
면 적	제한없음	25ha 미만
사 례	'05아이치, '10상하이, '15밀라노 등	'93대전, '08사라고사, '12여수 등

전략물자수출통제기반구축(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전략물자수출통제기반구축	3,560	4,009	4,859	850	21.2

* 사업코드 : 21-11-0-110-113-1100-1133-501

* 담 당 자 : 무역정책관(남기만), 무역안보팀장(주소령, 044-203-4050), 사무관(이학동, 044-203-4052), 주무관(김현석, 044-203-4056)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계속('04년~)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전략물자 취급 기업, 연구기관, 관련 부처 등
지원조건	민간 보조
사업시행주체	전략물자관리원

2. 사업목적

☐ 9.11 테러 이후 국제무역 질서로 부상한 전략물자 수출통제 규범의 국내 이행기반 조성을 통한 전략물자 수출관리의 효율성 확보

- 우리 기업의 불의의 피해를 적시에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수출기반 확보를 위해서 무역안보 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재원의 지원 절실

< 주요 전략물자 수출통제 국제 동향 >

- UN안보리결의 1540호('04.4) : 회원국들에게 전략물자 수출통제 국내 법제화 및 이행·처벌 의무화

- UN안보리결의 1929호('10.6) :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금융제재, 자산동결, 화물검색 등 다양한 對이란 제재수단 규정
 - * UN안보리는 제재결의를 통해 이란(1929호, '10.6), 리비아(1970호, '10.6), 수단(1945호, '10.10), 이라크(1546호, '04.6) 등 11개국을 강력히 제재 중
- UN안보리결의 外 핵무기(NSG), 미사일(MTCR), 생화학무기(AG), 재래식 무기(WA) 등 4개 분야의 국제수출통제체제 이행 (우리나라는 모두 가입)

3. '14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전략물자관리원 기관운영비 : 2,769백만원(80백만원 증)

- 전략물자 전문기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기본운영비 등
 - 인건비(연봉, 제수당, 퇴직연금) : 2,013백만원
 - 기본운영비(사무실 임·관리비, 용품, 기타 관리비) : 756백만원

② 수출관리 지원사업 : 2,090백만원

① 수출허가 및 수출지원 (331백만원)

- (전략물자 판정) 기업 신청에 따라 수출 물품 및 기술 등에 대해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152백만원)
- (우려국 안전거래 지원) 對이란 거래기업에 안정적 서비스 제공 및 거래기업의 피해방지를 위한 점검·지원 강화(179백만원)
 - 확인서 심사(20), 설명회(10), 민원처리 고도화(75), 시스템 운영(74)

② 전략기술 수출관리 선진화 (447백만원)

- (전략기술 확인지표 개발) 연구개발 관련자 스스로 전략기술 관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한 지표 고도화(25백만원)
 - 최근 기술변화 및 개발동향을 반영하여 3년간 구축된 확인지표의 쏠분야에 걸쳐 연계율을 높이도록 분야별 전문가 자문검토

- **(전략기술 관리체계 구축)** 전략기술 관리체계가 취약한 대학 등에 전략기술의 안전한 이전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지원(57백만원)
 - 대학의 전략기술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조직진단, 표준 규정, 전산모듈 개발지원 등 지원(경남권 거점대, 포항공대)
- **(전략기술 사전확인)** 국가R&D과제의 전략기술 여부를 연구개발 시작단계부터 사전확인함으로써 연구과정에서의 국부유출 및 전략기술 불법 이전 등을 방지하고, 최종 기술의 사업화도 관리 (365백만원, 292백만원 증)
 - 대외무역법 개정('13.7.30)으로 '14년부터 전략기술 무형이전에 대한 수출허가제도가 시행되므로 전략기술 수출관리 강화 필요
 - 사전확인 전문인력(165백만원), 외부자문(150백만원), 기타 운영비(50백만원)
- ③ 전략물자 수출관리 제도 확산 (913백만원)
 - **(CP구축 지원)** 전략물자 수출기업의 자율준수체제(CP) 구축 지원 및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심사(30백만원)
 - * 자율준수무역거래자 : 조직, 규정, 절차 등 자율준수체제(Compliance Program; CP)를 구축한 기업에 대해 심사 후 지정하는 제도
 - * CP기업(개사) : 美 4,000여, 日 1,400여, 英 1,700여, 獨 6,500여 vs 韓 193
 - 전략물자 주요 수출기업에 대한 CP구축 및 CP 지정심사 등 지원
 - * 조직진단, 취급 전략물자 현황파악, 해외 거래상대방 분석, 내부 직원 교육, 사내 규정 마련 등 종합 컨설팅을 통해 CP구축을 지원
 - **(CP 제도 내실화)** CP지정기업의 CP이행수준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69백만원)
 - 자율준수체제의 확산 및 기업의 자발적인 CP 이행제고를 위해 인센티브 확대 및 운영수준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화 병행 필요
 - **(중소기업 이행지원)** 중소기업의 전략물자 관리제도 미인지로 불법수출에 연루되지 않도록 집중 홍보 및 컨설팅(573백만원, 478백만원 증)
 - * “중소기업의 전략물자 제도 미인지로 인한 불법수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및 이행을 지원할 것”(‘13.8.19, 을지국무회의 VIP 지시사항)

- 중소기업 이행실태 조사, 사이버교육관 구축, 중소기업용 홍보 영상 제작, 중소기업 컨설팅 등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 * 이행실태조사(93백만원=3만社×3.1천원), 중소기업 대상 교육·홍보(280백만원), 중소기업 컨설팅(200백만원=200社×1백만원)
- **(전략물자 관리제도 교육·홍보)** 불법수출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비(167백만원)
 - 전략물자 및 기술 관리제도에 대한 기업의 인식저하로 불법수출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지속적인 교육·홍보로 인지도 제고 필요
- **(국내외 수출통제 현안 및 동향 조사·분석)** 수출통제 국제동향 조사, 제도분석, 유관기관 의견수렴 등(22백만원)
 - 특히, 최근 對이란 무역제재로 인한 기업 리스크가 급증하여 관련 동향 및 현안조사, 유관기관 협의 수요가 급증
- **(전략물자 국제협력)** 통제기준 및 통제품목 결정 등 수출통제 국제규범 형성시 우리나라 입장을 반영(52백만원)
- ④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 운영(399백만원)
 - 사이버공격에 대비한 이중화(전략물자관리시스템), 판정시스템 외부연계, 전략물자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등
 - 사이버공격 등에 대비한 Yestrade 이중화(112), 판정시스템 외부연계(110), 전략물자관리시스템 등 운영 및 유지보수(177)

□ 지원 필요성

- **(기관 운영)**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국제의무를 준수하고 기업의 불법수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수행하여야 할 업무임
 - 정부가 수행할 업무중 판정, 조사·분석, 교육·홍보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 위탁을 위해 전략물자관리원을 설립('07.6)
 - 그러나, 9.11테러 이후 국제무역 질서로 급부상한 전략물자 수출통제 업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서는 관리원의 역량 확충 절실
 - * 주요국에 비해 수출통제 전담체제 열악(韓 47명, 美 415명, 日 184명, 英 92명)

- (사업 수행) 전략물자관리원이 전략물자 수출관리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 위탁사업 추진재원의 적기지원 필요
 - 특히, 중소기업의 불법수출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실태조사, 교육·홍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 추진 필요
 - 또한, 국제사회의 기술무형이전 통제강화 추세 속에서 국가R&D 사전확인업무를 통해 기술의 무형적 이전 관리가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 전략물자수출입통제기반구축사업	3,560	4,009	4,859	850	21.2
▪ 전략물자관리원 기관운영비	2,306	2,689	2,769	80	3.0
▪ 수출관리 지원사업	1,254	1,152	1,152	-	-
▪ 전략기술 사전확인제	-	73	365	292	400.0
▪ 중소기업 전략물자 관리지원	-	95	573	478	503.1
☐ 비목(합계)	3,560	4,009	4,859	850	21.2
○ 민간경상보조(320-01)	3,560	4,005	4,854	849	21.1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4	5	1	25.0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무역강국에 걸맞는 글로벌 스탠더드의 제도·조직 정비
 - 전략물자관리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 전문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에게 전략물자 판정 등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
 - 자율준수무역거래 활성화하여 기업이 선도적으로 참여하는 '기업 자율관리' 방식으로 수출통제관리체계 강화
- 기업의 수출통제 관리 및 이행능력 제고
 - 대량살상무기의 확산효과가 큰 전략기술에 대한 수출통제 이행기반 확충
 -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기업의 이행부담 경감
 - 수출통제의무 이행 확산 및 인식제고를 통해 기업의 불법수출 피해 방지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3	40.09	○ 전략물자관리원 운영 및 수출관리 지원사업 : 40.09(40.09억원×1개×100%)
'14	48.59	○ 전략물자관리원 운영 및 수출관리 지원사업 : 48.59(48.59억원×1개×100%)
'15	38.09	○ 전략물자관리원 운영 및 수출관리 지원사업 : 38.09(38.09억원×1개×100%)
'16	38.09	○ 전략물자관리원 운영 및 수출관리 지원사업 : 38.09(38.09억원×1개×100%)
'17	38.09	○ 전략물자관리원 운영 및 수출관리 지원사업 : 38.09(38.09억원×1개×100%)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전략물자관리원 운영지원

< 대외무역법 제29조 (전략물자관리원의 설립 등) >

- ① 전략물자의 수출입 업무와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물자관리원을 설립한다.
- ⑤ 전략물자관리원은 정부의 전략물자 관리정책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른 판정 업무
 - 2. 제28조제1항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
 - 3. 전략물자의 수출입자에 대한 교육 업무
 - 3의2. 제5조제4호 및 제4조의2에 따른 조치의 이행을 위한 정보제공 등 지원업무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⑧ 정부는 전략물자관리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전략물자관리시스템 고도화

< 대외무역법 제28조(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과 공동으로 전략물자 수출입 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이란 비금지 확인서 심사업무 지원

< 對이란 교역 관련 우리 정부 대응현황 >

- UN안보리결의 1929호('10.6.9) 이후 미국 등은 기업에 이란 전략물자 수출 및 이란과의 금융거래 제한 등 제재조치 시행
- 우리나라도 안보리결의 이행을 위해 제재조치를 발표('10.9.8)하고 이란 교역·투자 및 대금결제 업무절차 관련 「가이드라인」 시행
 - 이란과 교역하는 기업은 전략물자관리원이 발급하는 「교역·투자 非금지 확인서」를 거래은행에 제출해야 대금결제 가능

○ 추진경위

- 추진배경 : 미국의 9.11테러사건 이후 국제규범화된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를 이행하기 위한 국제적 의무이행 사업으로서 대외무역법(제19조~제31조)에 근거하여 추진
 - * 동법 제29조가 '전략물자관리원 설립'을 규정
 - * UN안보리결의1540호('04.4.28)에 의거, 모든 회원국은 전략물자 수출관리 의무화(수출자는 전략물자 수출시 허가 신청절차 의무화)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 전략물자수출 통제기반구축	29.71	32.00	35.60	40.09	48.59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0년	29.71 ()	- ()	- ()	29.71 ()	29.71 ()	- ()	- ()
'11년	32.00 ()	- ()	- ()	32.00 ()	32.00 ()	- ()	- ()
'12년	35.60 ()	- ()	- ()	35.60 ()	35.60 ()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10년 임시국회 업무보고(국회 지경위 유관기관 업무보고, '10.4월)
 - 전략물자 전담조직이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인원으로 소극적 운영되고 있음(이종혁 의원)
 - * 한국 47명, 미국 415명, 일본 184명, 영국 92명, 독일 193명
 - UAE 원전품목의 불법 유출을 예방키 위해 판정, 홍보, 교육 등 철저한 관리 필요 (김기현, 이종혁, 정태근 의원)
 - 중소기업 등 국내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자율관리체제 도입 지원으로 자율준수기업 대폭 확대 필요 (김정훈, 우제창, 이종혁 의원)
- '11년 예산심사(국회 예결위·지경위, '10.11월)
 - 전략물자관리원의 『대이란 교역·투자 非금지확인서』 발급업무는 기업의 대이란 수출 및 대금결제 해소를 위해 중요한 사업이므로 정부예산지원 필요 (이화수·이상민의원 '이상 예결위', 김성희·정영희·김재경 '이상 지경위')
- '13년 예산심사(국회 예결위·지경위, '12.11월)
 - 국가R&D과제가 불법이전에 연루될 경우 국가신뢰도 저하 우려되므로 전략기술 사전확인제 예산 10억 증액 필요 (권성동의원 '이상 예결위', 이강후·이채익 '이상 지경위')

☐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 자체평가 : 해당 없음

☐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 없음

☐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국정감사, 산하기관 업무보고 및 예산 심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 원전건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 보강(판정인력 3명), 원전기업 자율준수체제 도입 지원 등 적극 지원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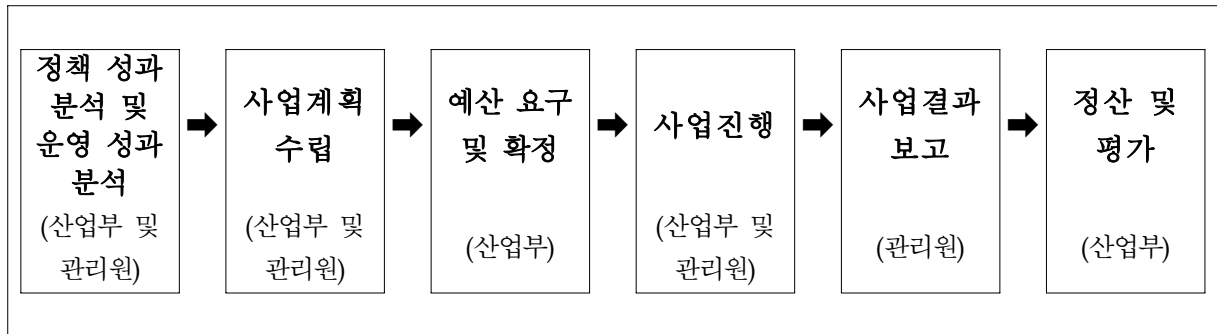
- * '10년 한전을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하는 등 기업지원 적극 추진
- 포괄수출허가제도 개선, 인센티브 확대, 컨설팅지원 확대, 맞춤형 교육·홍보 실시, 전담인력 확충 등 자율준수체제 도입 확대를 위해 정책적 노력 추진
- '12년 예산요구에 전략물자관리원의 「대이란 교역·투자 非금지 확인서」 발급업무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 반영(3.02억원)
- '13년 예산에 전략기술 사전확인제 시행 예산 반영(사업비 0.73억원)
- '14년 예산요구에 전략기술 사전확인제 시행 관련 증액 요구 및 확정 반영(총 3.65억원, 2.92억원 증)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핵무기, 생·화학무기, 미사일, 재래식무기 등 4개분야 물자가 특정 국가 및 테러조직에 공급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국제협약 체결 운영
- 해외국은 대부분 정부 조직에서 운영하되 장기간 보임으로 전문성 확보

국가	담당부서	담당인원	수출규모 (억불)	수출허가 신청건수
미국	상무부 BIS 국무부 DDTC 재무부 OFAC 등	BIS 415명	('11)14,807	('11)108,501
영국	통상부 ECO 외무성 비확산국 국방부	ECO 92명	('11)4,346	('11)12,515
독일	경제수출통제청 (BAFA)내 2개국	BAFA 193명	('11)13,919	('11)49,000
일본	경산성 안보무역 관리부(3개과) 지역경제산업국	안보무역관리국 84명 지역경제산업국 60명 *안전무역정보센터 40명	('11)8,245	('10)8,300
한국	산업부(1개팀), 방사청, 교과부, 통일부	무역안보팀 9명 *전략물자관리원 38명	('11)2,783	('11)5,635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참고 1

전략물자 국제 수출통제 제도 개요

□ 전략물자 수출통제 배경

- 냉전시대에 서방세계는 對공산권수출관리위원회(COCOM¹⁾)를 결성하여 첨단무기 및 기술의 공산권 유입을 통제('49~'94)
- 脫냉전 후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4대 수출통제체제를 중심으로 전략물자의 우려국가 및 테러집단 유입을 통제

【 국제 수출관리 체제('13.3월 기준) 】

통제 체제	통제대상물자 및 기술	품목수	회원국	발족
원자력공급국그룹(NSG) ²⁾	핵 무기 (원자력전용, 이중용도품목·기술)	241개 (원자력전용:131개)	47개 국 ³⁾	'78년
호주그룹(AG) ⁴⁾	생화학무기 (생화학물질 및 이중용도품목·기술)	218개	41개 국	'85년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⁵⁾	미사일 및 운반체 (미사일 및 이중용도품목·기술)	185개	34개 국	'87년
바세나르체제(WA) ⁶⁾	재래식 무기 (이중용도품목·기술)	755개	41개 국	'96년
계		1,399개 / HS(10단위) : 1,960여개		

- 9.11테러 이후 대량파괴무기(WMD⁷⁾) 확산방지가 국제안보의 핵심으로 등장했으며, 전략물자 수출통제가 WMD 비확산의 주요수단으로 부상

□ 국제규범화 동향

- UN안보리결의(1540호, '04.4)를 통해 전략물자의 수출통제를 국제규범화하고 회원국들에게 이행을 의무화

* UN안보리는 제재결의를 통해 북한(1718호('06), '1874호('09), 2087호('13)), 이란(1737호('06), 1747호('07), 1803호('08), 1929호('10)) 등 11개국 제재 중

1) 對공산권수출관리위원회(COCOM : Coordinating Committee for Multilateral Export Controls)

2) 원자력공급국그룹(NSG : Nuclear Suppliers Group) : 원자력 물자 관련 통제

3) 2012년 11월 멕시코의 가입에 따라 47개국으로 증가

4) 호주그룹(AG : Australia Group) : 생화학무기 관련 통제

5)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 미사일 관련 통제

6) 바세나르체제(WA : Wassenaar Arrangement) : 재래식 무기·이중용도 품목 관련 통제

7) 대량파괴무기(WMD, Weapon of Mass Destruction) : 생화학무기·핵무기 등 대량의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무기

참고 2

우리나라 제도 및 운영 현황

□ 개 요

- '87년, 대외무역법시행령에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도입하고, 국제수출통제체제 및 비확산협약에 모두 가입

* 가입년도 : NSG('95), AG('96), WA('96), MTCR('01), BWC⁸⁾('87), CWC⁹⁾('97)

- 전략물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05.2), 전략물자관리원 설립('07.6) 등 지원체계 마련

* Yestrade는 전략물자 판정, 허가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여 효율적 이행에 기여

□ 수출통제 제도 주요내용

- 국제수출통제체제 및 협약에서 지정한 통제 물품 등을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략물자로 지정·고시
- 전략물자관리원 또는 기업자체 판정을 통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허가를 거쳐 수출

【 국내 수출관리 관련 부처 현황 】

소관부처	근거법령	통제 품목
산업통상자원부	대외무역법	이중용도용품(Dual-Use)
	방위사업법	일반 방산물자
방 위 사 업 청	대외무역법·방위사업법	주요 방산물자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원자력 전용품목
통 일 부	남북교류협력법	北韓 반출입 물품

□ 운영 현황

- 정부는 정책방향 결정 및 수출허가업무를 수행하고, 판정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는 전략물자관리원이 수행
- 온라인시스템(Yestrade)으로 통일부·방사청·관세청의 시스템과 정보를 공유하며 기업에게 수출관리규범 이행편의 제공

8) 생물무기금지협약(BWC :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 생물 및 독소무기의 개발·생산·비축을 금지한 국제조약

9) 화학무기금지조약(CWC : Chemical Weapons Convention) : 화학무기의 개발과 생산·사용을 금지한 국제조약

참고 3

전략물자 등 수출통제관련 처리현황

□ 판정 및 수출허가 처리현황

(단위 : 건)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품목 판정	자가판정	2,919	10,952	13,707	11,893	8,614	9,491	11,912	18,039
	· 해 당	122	1,990	1,362	2,931	1,160	3,088	1,705	3,310
	· 비해당	2,797	8,962	12,345	8,962	7,454	6,403	10,207	14,729
	사전판정	817	2,670	3,212	2,795	3,701	4,108	7,333	11,725
	· 해 당	57	194	303	347	483	465	1,491	2,492
	· 비해당	760	2,476	2,909	2,448	3,218	3,643	5,842	9,233
수출 허가	허가심사	723	1,451	1,550	1,721	2,210	2,826	3,694	4,014
	· 허 가	656	1,303	1,408	1,496	1,977	2,783	3,657	3,996
	· 반 려	66	145	139	222	227	37	37	18
	· 거 부	1	3	3	3	6	6	0	0

- * 註 : 1. 반려사유는 주로 非전략물자, 서류미비(보완요청), 타부처 소관(이관) 등
2. 실적에는 일반방산물자 처리현황 포함

□ 이란교역 및 투자비금지 확인서 처리현황

(‘13년 기준, 단위 : 건)

구분	2010년 (‘10. 9.8 ~ 12.31)	2011년	2012년	2013년
① 신청서 접수	4,696	15,036	16,787	18,675
· 화학	2,371	8,464	9,927	10,128
· 기계	1,370	3,012	3,003	3,401
· 소재	660	2,335	2,220	2,898
· 전자	295	1,225	1,637	2,248
② 신청서 처리	4,430(14)	14,497(11)	15,877(3)	18,093(83)
· 화학	2,234(1)	8,162(3)	9,516(1)	9,864(10)
· 기계	1,321(11)	2,965(7)	2,739(0)	3,310(54)
· 소재	622(2)	2,205(0)	2,072(1)	2,803(19)
· 전자	253(0)	1,165(1)	1,550(1)	2,116(0)
③ 민원 상담	1,494	1,675	2,206	2,610
· 전화상담	1,437	1,662	2,176	2,574
· 방문상담	57	13	30	36

참고 4

전략물자관리원 현황

□ 설립근거 : 대외무역법 제29조

□ 주요경과

- '04. 8. 30, 무역협회 부설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 개소
- '06. 12. 8, 설립 근거법(대외무역법) 국회 의결
- '07. 6. 5, 전략물자관리원 설립

□ 설립배경

- 9.11테러 이후 전략물자 관리가 국제안보의 핵심현안으로 부상
- 전략물자 수출통제업무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별도의 전문기관으로 설립

□ 직제 및 정원 : 2본부 6팀, 40명

□ 주요기능

- 전략물자 사전판정
- 전략물자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
- 전략물자의 수출입자에 대한 교육
- 전략물자 수출입관리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홍보의 지원
-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된 국제협력의 지원
-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지원 업무

□ 예 산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항 목	'12	'13	'14	항 목	'12	'13	'14
1. 정부보조금	3,560	4,009	4,859	1. 사업비	1,240	1,933	3,064
2. 기타 수탁사업	150	872	924	2. 경상운영비	731	756	756
3. 기타 수입	10	50	50	3. 인사제비	1,749	1,894	2,013
합 계	3,720	4,931	5,833	합 계	3,720	4,583	5,833

지역전문가 양성 및 공급(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지역전문가 양성 및 공급	4,087	3,262	4,062	800	24.5

* 사업코드 : 19 - 11 - 0 - 110 - 113 - 1100 - 1134-302

* 담 당 자 : 무역정책관(남기만), 무역정책과장(권오정, 044-203-4040), 사무관(김정훈, 044-203-4026)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7년~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민간경상보조 ('13) 73.1% → ('14) 74.4%
사업시행주체	한국무역협회, KOTRA 등 수출지원 전문기관

2. 사업목적

□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화는 새로운 수출동력 창출과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과제

○ 교역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각 지역별 전문가의 양성 및 공급이 시급

* 동 사업은 공약사업이자 국정과제(“현지 전문가를 집중 양성을 해서 중소기업들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수립”, '13.1.28)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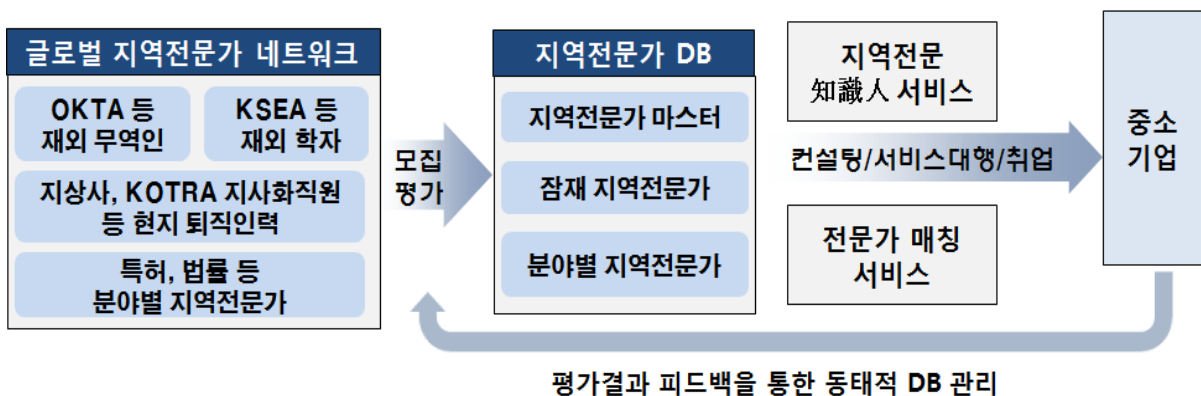
○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및 니즈에 따라 맞춤형 지역전문가 양성·공급전략 마련

- (수출초보기업) 지역전문가 수급 애로 단기 해소방안으로 국내외 천여명의 전문가로부터 “지역전문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 제공
- (중견·강소기업) 전문인력 자체확보를 위한 지역청년인재 양성 방안으로 지역별 산업별 특화과정 재편 및 취업연계과정 마련

3. '14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지역전문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제공 : 신설 400백만원



- 국내외 지역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DB화 : 150백만원
 - (기 구축한 무역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중소기업에 바로 수출 컨설팅이 가능한 지역별 전문가리스트를 공급
 - 해외 무역인, 지상사 퇴직인력, 투자진출기업 등 지역 비즈니스 전문가는 물론 글로벌 인턴, 봉사단원 등 잠재 지역인재까지 포괄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 '14년도 1,000명 구축 후 5년간 3천명으로 단계적 확대

- 산출내역 : HW 구축 100백만원+SW구축 100백만원+시스템 구축 200백만원

해외	OKTA 6,500 회원사, KSEA 등 재외과학자, 해외봉사단 4,046명, 투자진출기업 등
국내	지상사 퇴직인력, 무역관련 자격증 소지자, 학계 전문가, 글로벌 무역전문가 및 글로벌인턴 등

- 지역전문가 지식인(컨설팅) 서비스 : 200백만원
 - 지역전문가 네트워크 중 전담 컨설턴트 및 파트타임 컨설턴트를 선발하여 실시간 맞춤형 컨설팅 제공
 - 네이버 등 민간포털과 협력, 수출중소기업들이 시·공간의 제약 없는 이용자 중심의 질의응답식 지역 전문지식 제공

전담 컨설턴트	서비스 수요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풀타임 채용 - 인니, 미얀마 등 신흥시장, 미국, 중국 등 주력시장
파트타임 컨설턴트	서비스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서비스 건수별 인센티브 제공
기타 지역전문가	무역관련 자격증소지자, 교수 등 전문가의 자발적인 무료 자문 유도

- 지역전문가 매칭서비스 제공 : 50백만원
 - 지역전문가 코디네이터를 활용, 중소기업의 지역전문가 수요에 따라 적격의 지역전문가와 매칭

○ 지역특화사업단 재편(기존 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사업)
: 3,262백만원('13년과 동일, 24개 대학매칭 1,200백만원)

- 무역전문 교육비 : 2,289백만원
 - 24개 사업단(무역관련 대학) 700여명에 학생을 대상으로 무역 기본교육, 심화교육, 현장실습컨설팅, 국내인턴십 등 실시
 - * 산학협력을 통한 온오프라인마케팅, 국내인턴실습(2개월) 등 총 600시간 교육 ; 기본교육(273백만원), 심화교육(456백만원), 현장실습지원비(770백만원), 무역컨설팅교육(240백만원), 국내인턴 지원비(550백만원)
- 사업운영비 : 773백만원(△ 200백만원)
 - 24개 대학(사업단) 운영지원비 : 648백만원 (각 대학당 2,700만원)
 - 교육 프로그램개발, 기획/점검/평가, 행사비용 : 125백만원
- 지역특화과정 편성 및 지역특화사업단 실시 : 증 200백만원
 - 국정과제인 “지역전문가 육성 및 공급”전략('13.7월 수립)에 따라 24개 사업단 중 5개대학을 선정하여 지역특화 사업 실시(200백만원)
 - * 사전교육 : 특화지역 언어, 이문화상관습, 비즈니스매너 등
 - * 산학협력 현장실습 : 중소기업과 특화지역에 대한 온라인 마케팅, 전시회 공동

참가, 바이어발굴, 무역서식 작성, 수출계약에 이르기까지 밀착 컨설팅 실시
* 산출내역 : 200백만원(4,000만원 × 5개 대학)

○ **취업연계교육과정 운영 : 400백만원 (기업매칭 200백만원)**

- 수출중견기업과의 매칭을 통하여 현지에서 기업맞춤형 장기실무 교육(가칭 지역특화마스터과정) 실시 후 취업
 - (기업수요반영) 수출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교육대상 확정
 - (국내교육) 무역실무/마케팅, 영어/특화지역 언어, 이문화상관습 등
 - (해외현지교육) 기업수요에 맞춘 지역특화 및 수출 OJT 교육 시행

□ **지원 필요성**

- 중소기업은 창조경제 시대의 주역으로서 중소기업의 수출을 통해 새로운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이 기대됨.
- 그러나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
 - 우리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수의 99.9%를 차지하지만, 이 중 수출 기업은 8.3만개로 전체 중소기업의 2.7%에 불과
 - * 중소중견기업 수출비중(%) : ('09년) 36.9 → ('10년) 34.5 → ('11년) 33.0 → ('12년) 33.4
 - * 중소기업 중 수출기업 비중: 영국 11%, 독일 9.1%, 네덜란드 9.4%, 미국 3.9%
- 수출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가 **지역별 전문인력 부족으로 지적됨**
 - * 중소기업 글로벌역량 100점 중 44점 수준, 인재육성(38.8%) 및 현지화 전략 강화 (31.5%) 가 글로벌화의 핵심요인 (산업연구원)
- 중소기업의 영세성으로 지역전문가 확보에 애로
 - 인건비부담 및 구직자의 중소기업 기피로 인해 자체인재육성이 곤란
 - * 수출 중소기업 중 수출규모 10만달러 이하의 초보기업이 7.3만개(81.9%)
- 수출기업 역량 및 니즈에 따라 단계별로 맞춤형 인재 공급 필요
 - (내수/수출초보) 지역의 무역정보(바이어·전문가 POOL, 인증 등 수출절차)나 수출 전반에 걸친 컨설팅이 우선적으로 필요
 - (수출유망) 이미 시장을 개척한 기업은 시장 확대를 위한 현지 마케팅 및 분야별 전문가 필요 → 중견 및 퇴직인력, 해외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단기 전문인력 지원

- (중견/강소) 글로벌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하여 지역(국가)별 전문 인력을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운영할 필요 → 글로벌무역전문가 재편, 글로벌인턴 등을 활용한 맞춤형 인재양성

- 기존 글로벌무역전문가 양성사업 재편(지역특화사업단) 등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사업추진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 지역전문가 양성 및 공급	4,087	3,262	4,062	800	24.5
▪ 지역전문 컨설팅	-	-	400	400	순증
▪ 지역특화사업단	4,087	3,262	3,262	-	-
▪ 취업연계 지역전문교육	-	-	400	400	순증
☐ 비목(합계)	4,087	3,262	4,062	800	24.5
○ 민간경상보조 (320-01)	4,087	3,262	4,062	800	24.5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수출초보기업) 정보·컨설팅 지원

- (지역전문가플랫폼) 단계적 확장 및 질적 제고 필요

- (양적확대) '14년도 1천명의 지역전문가 네트워크를 확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5년간 3천명으로 단계적 확대
- (질적심화) 지식인(컨설팅) 서비스와 매칭 서비스는 중소기업 수출의 오프라인 컨설팅 등 직접 지원형태로 심화

○ (수출유망기업) 국내외 잠재인력을 발굴, 매년 200명의 단기간 내 활용 가능한 실무 전문가 양성

- (중견·퇴직인력) 지·상사 및 KOTRA 무역관 퇴직인력, 장기유학 인력을 발굴하여 단기간(2개월)의 무역실무교육을 통해 컨설턴트 및 수출유망기업의 단기 파견직 등으로 활용

* (육성인력) '15년 80명 → '16년 100명 → '17년 150명

- (재외동포) 현지언어와 상관습·상문화에 능통한 교포인재를 발굴, 단기간 무역실무교육 후 현지 수출인력으로 활용

* (육성인력) '15년 40명 → '16년 50명 → '17년 50명

- (재직자) 중소기업 재직인력에 대한 지역 실무밀착형 교육

* (육성인력) '15년 50명 → '16년 100명 → '17년 150명

○ (중견·강소기업) 맞춤형 취업연계 청년지역전문인력 양성·공급

- 기존 “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사업을 지역전문가 육성사업인 지역 특화사업으로 재편

* '14년 5개 대학(130명) → '15년 이후 30개 쉰 대학(900명)으로 확대

- 중견기업과 매칭을 통해 “지역전문가 마스터과정” 등 전문교육을 실시 후 기업에 직접 공급 추진

* 취업인력 : '14년 50명 → '15년 100명 → '16년 100명 → '17년 150명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3	33	· GTEP(24개 대학) * 해외인턴 900백만원은 교육부 이관
'14	41	· GTEP(24개 대학) 재편 · 지역전문 맞춤형컨설팅 서비스 지원 · 취업연계 청년전문가 육성
'15	41	· GTEP(24개 대학) 재편 · 지역전문 맞춤형컨설팅 서비스 지원 · 취업연계 청년전문가 육성
'16	41	· GTEP(24개 대학) 재편 · 지역전문 맞춤형컨설팅 서비스 지원 · 취업연계 청년전문가 육성
'17	41	· GTEP(24개 대학) 재편 · 지역전문 맞춤형컨설팅 서비스 지원 · 취업연계 청년전문가 육성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관련법령근거 :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
- 제4조(무역거래 기반조성 사업 및 시행기관) 제①항, ③항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반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4. 무역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이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을 하는 데
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무역전문인력의 교육·훈련 등) 제①항

①정부는 무역업계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무역전문인력의
양성 및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관련국정과제 : 5-1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5-1 중소기업 역량별.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지역전문가를 양성

(VIP 지시사항, '13.1.28) *경제 2분과 업무보고

중소기업들이 자신들도 '해외에 진출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지만.....
현지 전문가도 부족해서 업무를 못내는 거예요.....현지 전문가를 집중 양성을 해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경위

- '00. 7월 청년무역인력양성사업 추진
- '01. 9월 Trade Incubator 사업 추진
- '07. 7월 청년무역인력양성사업 폐지 및 Trade Incubator 사업을
글로벌무역전문가 양성사업으로 확대개편
- '13. 1월 지역전문가 육성 및 공급관련 공약 및 국정과제화
- '13. 7월 지역전문가 육성 및 공급전략 수립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09예산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 지역전문가 양성 및 공급	99	89	41	41	33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 해당없음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6) 사업추진절차 : 기 제시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 없음

(10) R&D사업의 분야별 투자비중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없음

대한상사중재원지원사업(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대한상사중재원지원사업	800	1,100	1,100	-	-

* 사업코드 : 19-11-00-110-113-1100-1136-301

* 담 당 자 : 무역정책관(남기만), 무역정책과장(권오정), 주무관(문인수)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93~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클레임 해결목표 13,680건(중재 380건, 알선 1,060건 및 상담 12,240건)
지원조건	민간경상보조, 정액지원
사업시행주체	대한상사중재원

2. 사업목적

- ☐ FTA 확대 등 무역환경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무역클레임의 해결 및 예방을 위한 서비스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대외무역촉진 및 상거래질서 확립에 기여

3. '14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클레임 해결 서비스지원 : FTA시대에 부응하는 클레임 해결 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업비 1,100백만원 요구('13년 대비 동일액)

- 중재사업 지원비 : 950백만원
 - 웹기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300백만원
 - 중재인수당보조, 중재서류송달, 현장검증 등 중재판정비 : 220백만원
 - 사건시스템,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서버 관리 : 90백만원
 - 중재법규 발간, 분쟁예방홍보책자 발간 등 법규책발간 : 60백만원
 - 분쟁예방강좌, 모의상사중재 등 각종 강좌 및 설명회 : 40백만원
 - 중재심리 개최 등 중재절차 진행 : 150백만원
 - 국제협력 등 중재네트워크 구축 : 80백만원
 - 우수 중재인 발굴, 중재인교육 등 중재인 관리 : 10백만원
- 알선·상담사업 지원비 : 150백만원
 - 고객내방상담, 당사자회의 등 알선절차 진행 : 105백만원
 - 알선·상담을 위한 알선서류송달, 현장출장 : 35백만원
 - 알선·상담사업 홍보 및 ADR네트워크 구축 : 1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중재는 무역클레임의 가장 효율적인 수단
 - 법원의 재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전문가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중재인이 내린 판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자주적인 법정제도**
 - 무역클레임 발생시 양국간 법제도 차이, 송달지연 등으로 인하여 시간·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소송을 통한 해결보다는 동일한 효력을 지닌 중재를 통해 해결
 - 중재·알선을 통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분쟁해결비용 절감**
 - 신청금액에 따라 상이하나 법원의 3심제인 소송에 비하여 단심으로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므로 시간·비용 절감 가능
- * 중재수수료는 법원소송 대비 최고 89% 저렴

< 중재와 소송비용 비교 >

(단위 : 천원)

신청금액	중재관리요금	소송비용	
		1심	3심
1천만원	45	110	406
2천만원	90	155	609
3천만원	135	230	841
5천만원	225	321	1,246
1억원	450	546	2,259
2억원	850	946	4,059

- 중재사업의 공익성에 기인한 국고지원 필요
 - 우리나라에서 중재를 이용하는 고객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임
 - '13년 접수된 중재사건의 61%가 신청금액 2억원 이하 소액사건
 - 현재 국고보조금 지원은 소상공인과 영세업자의 효율적인 분쟁해결이라는 공공재적 기능을 지님
- 이와 같은 공공재적 성격으로 인하여 사업수입(중재수수료) 증대는 한계가 있고, 공공재 기능의 강화를 위해 국고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 대한상사중재원지원	800	1,100	1,100	-	-
○ 중재사업지원비	650	950	950	-	-
○ 알선상담사업비	150	150	150	-	-
☐ 비목(합계)	800	1,100	1,100	-	-
○ 민간경상보조(320-01)	800	1,100	1,100	-	-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한-미, 한-EU등 FTA 체결국 확대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무역 분쟁 증가에 대비
 - 소액중재사건의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분쟁 애로 해결에 기여
 - * 중재의 약 61%가 분쟁금액 2억원 이하의 중소상공인 관련 사건
 - 중재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로 고객 감동 서비스 제공
 - * 중재사건처리기간 단축으로 클레임 비용 경감 추진
- 범국민적인 분쟁해결·예방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 기존의 무역 분야 등의 중재서비스 증진과 함께 ISD 관련 투자 중재, 금융 등 중점육성분야 관련 분쟁해결 역량 마련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3	11	○ 중재사건 처리비용 : 640백만원 (1건당 처리비용 189만원 × 338건) ○ 알선상담사건 처리비용 : 160백만원 (1건당 처리비용 13천원 × 12,613건) ○ 전산시스템 구축 : 300백만원(사건관리시스템 개편)
'14	11	○ 중재사건 처리비용 : 640백만원 (1건당 처리비용 168만원 × 380건) ○ 알선상담사건 처리비용 : 160백만원 (1건당 처리비용 12천원 × 13,300건) ○ 전산시스템 구축 : 300백만원(통합웹사이트구축)
'15	5	○ 중재사건 처리비용 : 162백만원 (1건당 처리비용 42만원 × 385건) ○ 알선상담사건 처리비용 : 38백만원 (1건당 처리비용 3천원 × 13,330건) ○ 전산시스템 구축 : 300백만원(시스템연계작업)
'16	5	○ 중재사건 처리비용 : 406백만원 (1건당 처리비용 104만원 × 390건) ○ 알선상담사건 처리비용 : 94백만원 (1건당 처리비용 7천원 × 13,350건)
'17	5	○ 중재사건 처리비용 : 406백만원 (1건당 처리비용 103만원 × 395건) ○ 알선상담사건 처리비용 : 94백만원 (1건당 처리비용 7천원 × 13,380건)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중재법 보칙 제40조,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4조

- 중재법 보칙 제40조(상사중재기관에 대한 보조)

정부는 이 법에 의하여 국내외 상사분쟁을 공정·신속하게 해결하고 국제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사중재사단법인에 대해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4조(무역거래 기반조성 사업 및 시행기관)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이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66. 3 : 대한상공회의소내 국제상사중재위원회 창립
- '70. 3 :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협회 설립
- '80. 8 :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으로 개편
- '93년부터 국고지원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 대한상사중재원지원	11	9	8	11	11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재정사업자율평가 : 보통(2011년)

○ 국회 지경위 우윤근의원 서면질의(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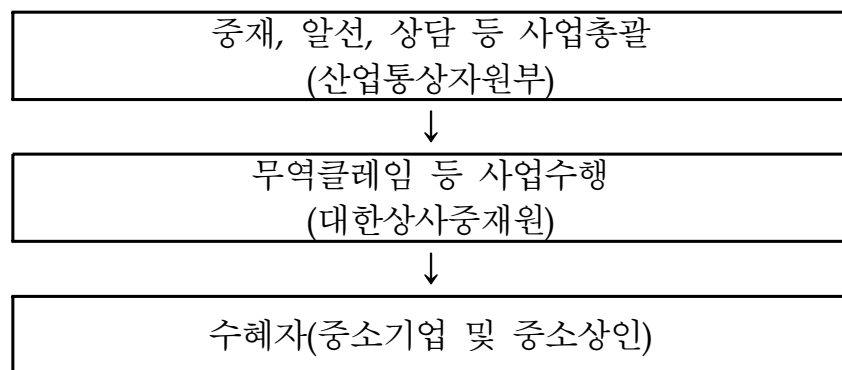
- 중재원의 노후화된 전산시스템 개편 시급

* 웹기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2013년부터 예산 3억원 추가반영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
 - 싱가포르 정부가 건립한 복합건물(맥스웰챔버스)에 입주(4백억원 투입)
 - * '10년 신규건물 입주 후 중재사건 지속적 증대, '12년 200건 최초 돌파
-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
 - 홍콩정부 소유건물(홍콩국제금융센터)에 입주
 - 연간 임대료 무상지원(1원) 및 최근 임대면적 2배 확장
-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
 -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의 법률사무부 산하 기관
 - 2012년 중재사건 : 1,060건, 재원 :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보조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최근 5년간 클레임 접수 현황 >

(단위 : 건, %)

구 분	'09	'10	'11	'12	'13
중 재	318	316	323	360	338
알 선	664	801	915	938	916
상 담	7,184	8,645	11,339	11,500	11,697
합 계	8,166	9,762	12,577	12,798	12,951
증가율(%)	0.1	20	29	2	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93,298	215,600	216,008	408	0.2

* 사업코드 : 21 - 11 - 0 - 110 - 113 - 1100 - 1137 - 301

* 담 당 자 : 무역정책관(남기만), 무역진흥과장(황병소), 사무관(김홍찬)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투자진출, 정보조사, 투자유치, 정부수입사업 등
총사업비	'62 ~ 계속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해당없음
사업시행주체	민간보조(수지차보전)

2. 사업목적

- ☐ 무역진흥, 투자유치 및 투자진출, 해외 전문인력유치 업무를 수행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조)

3. '14년 예산 내용

-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국내외 조직망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63,492백만원(보조금 63,492백만원)

○ 해외조직망(126개 무역관)의 임차료, 사무실 운영경비 등

▪ 62,092백만원('13) → 63,492백만원('14): 1,400백만원 증액

- * 「대외조직역량강화 후속조치」에 따른 '13년 무역관 3개처 신설예산 6개월분(3개x200백만원=600백만원) 반영, 14년 예산은 100% 반영
- * 「대외조직역량강화 후속조치」에 따른 '14년 무역관 4개처 신설예산 6개월분(4개x200백만원=800백만원) 반영

○ 국내조직망(인천공항사무소) 임차료, 사무실 운영경비 등

- 100백만원('13) → 100백만원('14) : 전년대비 동결

② 인건비: 87,107백만원(보조금 86,813백만원, 자체수입 294백만원)

○ 정규직원(727명), 별정직(82명), 별도정원(5명) 및 해외 현지직원(492명) 등 총 1,306명의 인건비

- 83,778백만원('13) → 87,107백만원('14) : 3,329백만원 증액

* 「대외조직역량강화 후속조치」에 따른 '13년 인력증원 인건비(정규직 해외 +32명, 현지직원 +20명) 6개월분 반영, '14년도에 100% 반영: 1,230백만원 (보조금 1,083백만원, 자체수입 147백만원)

* 「대외조직역량강화 후속조치」에 따른 '14년 인력증원 인건비(정규직 해외 +5명, 현지직원 +24명) 6개월분 반영 : 645백만원(보조금 645백만원)

* 인건비 공통증액 1.7% : 1,454백만원(보조금 1,454백만원)

<대외조직역량강화 조직진단 개요>

- 주관 : 기재부(공공정책국), 공동 참여: 국무총리실, 외교부, 산업부
- 대상기관 : KOTRA, KOICA, EDCF (3개 기관)/ 기간 : '10.10 - '11.1월
- 진단내용 : 범국가적 대외역량 강화를 위해 2012~2015년간 3개 기관별 조직 및 인력 증감요인분석 및 증감 추진방향 제시

③ KOTRA 본사 운영경비: 6,960만원(보조금 6,960백만원)

○ 사옥 시설관리, 제세공과금, 자산 관리비 등 기관 운영 기본경비

- 6,896백만원('13) → 6,960백만원('14) : 전년대비 64백만원 증액

* 12년 경평 A등급 0.5% 34백만원, 시설관리비 30백만원

④ 사업비: 68,448백만원(보조금 46,873백만원, 자체수입 21,575백만원)

○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해외 투자진출, 외국인 투자유치 등의 사업비

- 51,111백만원('13) → 46,873백만원('14) : △4,238백만원 감액

⑤ 예비비(경영평가 성과급): 11,870백만원(보조금 11,870백만원)

○ 정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 편성

▪ 11,870백만원('13) → 11,870백만원('14) : 전년대비 동결

□ 지원 필요성

○ 국가발전을 견인할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및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 신흥시장 개척,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해 KOTRA의 해외 수출마케팅 및 외국인 투자유치활동 강화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 지출	216,286	237,659	237,877	218	0.1
▪인건비	79,540	83,778	87,107	3,329	4.0
▪조직망운영비	60,920	62,092	63,492	1,400	2.3
▪경상운영비	9,022	6,896	6,960	64	0.9
▪사업비	53,444	73,023	68,448	△4,575	△6.3
▪예비비(경영평가성과급)	13,360	11,870	11,870	-	-
□ 수입	216,286	237,659	237,877	218	0.1
▪국고보조금	193,298	215,600	216,008	408	0.2
▪자체수입	22,988	22,059	21,869	△190	△0.9
□ 세출예산비목	193,298	215,600	216,008	408	0.2
○ 민간경상보조(320-01)	193,298	215,600	216,008	408	0.2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사업 혁신을 통한 국가 신성장동력 창출지원
 - 중기지원 서비스 강화 및 신흥시장 개척 등 국가 신성장 동력 창출지원
- 국제개발협력, 지식서비스 등 신기능 사업 전문화를 통한 기능 고도화
- 통상기능 정보강화를 통한 글로벌 정보 네트워크 구축
- 무역 2조 달러 및 투자유치 500억 달러 달성 기반조성
 - 가치경영 도입을 통한 수출증대 및 투자유치 확대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3	2,156	인건비 836, 조직망운영 621, 경상운영비 69, 예비비 119, 사업비 511
'14	2,160	인건비 868, 조직망운영 635, 경상운영비 70, 예비비 119, 사업비 469
'15	1,885	인건비 868, 조직망운영 635, 경상운영비 70, 예비비 119, 사업비 194
'16	1,870	인건비 868, 조직망운영 635, 경상운영비 70, 예비비 119, 사업비 179
'17	1,853	인건비 868, 조직망운영 635, 경상운영비 70, 예비비 119, 사업비 162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법률 제1059호, '62.4.24 제정)
 - * '95.8.4 개정(투자업무 추가), '03.9.29 개정(무역투자인력양성 기능추가)
- 대외무역법 제4조 : 무역의 진흥을 위한 물품 등의 수출입 지원
 1. 무역진흥을 위한 자문, 지도, 대외 홍보, 전시, 연수, 상담 알선 등을 업으로 하는 자
 2. 무역전시장이나 무역연수원 등의 무역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 대외무역법 제8조 :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
 - * '09.4.22 개정(해외진출지원센터 신설)

○ 추진경위

- '62년 무역진흥 등을 위해 대한무역진흥공사를 설립한 이래 정부 지원
- '95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외국인투자유치', '산업기술협력지원' 기능을 추가하여 국가무역투자진흥기관(TPO)으로 출범
- '98년 외국인투자지원센터 신설 및 '99.10.26일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사무소 개설을 통한 외국인투자유치 활동 강화
- '99년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을 개시하고, 부품·소재품목, 신흥시장 등에 대한 다양한 시장개척활동을 지원
- '02년 해외지역본부제를 출범, 8개 지역본부를 설치하고 본사인력을 전진배치하여 해외 현장지원인력을 보강
- '02.11월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10년까지 세계일류상품 1천개 발굴·육성
- '03년 Invest KOREA 출범, '04년 정보조사본부, '05년 전략마케팅 본부, 고객지원본부 및 '07년 Global Korea를 각각 신설
- '03.9월 무역진흥확대회의에서 VIP께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을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보고

- '04.12월 수출경쟁력강화대책회의에서 4천억달러 시대를 위한 수출 전략의 일환으로 적극적인 해외마케팅 전략을 수립
- '06.10월 제4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의료 산업 해외마케팅 서비스·정보제공 창구를 산자부로 일원화 결정
 - * KOTRA에 의료산업 해외마케팅지원센터 설치·운영
- '08.1월 중기지원체제 일원화를 신정부 국정과제로 채택
 - * VIP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 보고('08.5.16) 및 정부 방침 확정통보('09.5.30)에 따라 해외마케팅 지원활동을 KOTRA로 일원화
- '08. 4월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글로벌 전문인력유치 지원기능 수행을 위해 KOTRA 內 「Contact KOREA」 설치·운영 방안 확정
 - * '08.9 '글로벌전문인력지원센터' 개소
- '09년 대외무역법 제 8조 신설(4.22)에 따른 해외진출지원센터 설립(10.23)
 - * 기업의 해외진출과 관련된 상담·안내·홍보·조사 등 해외진출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해외진출지원센터를 둠
- '09년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설치운영에 관한 대통령 훈령('09.10.1)
 -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를 설치('09.10.15)
- '11년 국가브랜드, 국제개발협력, 자원 및 에너지개발, 방산물자교역지원 기능 법제화('11.3.30)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09예산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149	1,839	1,997	2,147	2,542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2012년: 전용, 예비비사용, 불용
 - 전용: “해외전문인력유치지원”에서 4억원 전용
 - 수출부진타개 위한 수출비상대책사업 신규추진 예비비 50억원 배정
 - 불용(5억원): FTA지원체계구축사업(471백만원), 예비비(11백만원)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0년	1,839 (1,839)	()	()	1,839 (1,839)	1,839 (1,839)	()	()
'11년	1,997 (1,997)	()	()	1,997 (1,997)	1,997 (1,997)	()	()
'12년	2,147 (2,147)	()	4 ()	2,201* (2,201)	2,196 (2,196)	()	5 (5)

* 예비비 50억원 배정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1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 기관 평가 : '08년 양호, '09년 우수, '10년 양호, '11년 우수
- 사장 경영평가 : '08년 우수, '09년 우수, '10년 양호

○ '11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 우수(80점)

- '08년 우수, '11년 우수

○ '09년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

- 지방무역관 폐쇄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중소기업 해외마케팅과 투자유치 등에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대책 등
→ 지방중소기업지원팀을 지방협력팀으로 개편, 지방소재 중소기업을 위한 지자체 및 광역경제권 협력사업 발굴 강화 등 14개 지적사항 조치완료

○ '10년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

- 재택근무자에 대한 복무관리 강화, 신흥시장 중심의 해외조직 재편, UN조달시장 진출확대 등에 관한 대책 등 총 19건
→ 재택근무자 일일보고제 및 정기평가 도입, 신흥시장 진출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아프리카 KBC 신설, 해외KBC내 UN조달지원센터 확대설치 등 지적사항 조치완료

○ '11년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

- 정부와 공공기관 해외사무소 통합 운용 방안 강구, 신산업·미개척 시장 전시회 지원 확대,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지원 프로그램 마련 등에 관한 대책 총 20건

→ 파견/입주 희망 유관기관 수요조사 시행 및 홍보 강화, 신산업 및 신시장 대상 전시회 선정 비중 확대, 중소·중견기업 육성사업 확대 추진 등 지적사항 조치 완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세계 각국은 정부보조금에 의한 무역·투자진흥기관을 운영 중에 있으며, 민간 직접 보조금이 금지되어 있는 WTO 체제하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이들 기관을 통한 자국 기업의 수출·투자유치 지원 활동 확대 추세

<주요국 무역진흥기관별 국내외 조직 및 인원 운영현황 비교>

구 분		일본(JETRO)	한국(KOTRA)	홍콩(HKTDC)
인원	명	1,580	1,157	900
예산	연간(백만불)	435	212	257
	1인당(백만불)	0.28	0.18	0.29

* KOTRA 예산은 2011년 기준 일본(JETRO) 및 홍콩(HKTDC)에 비해 1인당 예산규모에서 지원율이 60% 수준에 그침.

(5) 사업추진절차

-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국고 보조금 예산(매년 4-5월) → 지경부 예산심의 및 조정(6월) → 기획재정부 예산심의 및 조정(7-8월) → 국회 심의·조정(10월) → 차년도 국고 보조금 예산 확정 → 차년도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예산 편성(11-12월) → 사업집행(연중) → 사업종료 후 결산(차년도 1분기) → 산업통상자원부 결산 심사(차년도 1분기) →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차년도 1분기) → 국회결산 심사 및 확정(차년도 3분기)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중소중견기업수출경쟁력강화(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중소기업수출경쟁력강화	26,345	34,000	40,581	6,581	19.4

* 사업코드 : 21 - 11 - 0 - 110 - 113 - 1100 - 1137 - 305

* 담 당 자 : 무역정책관(남기만), 무역진흥과장(황병소), 사무관(김홍찬)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지사화, 중견기업글로벌기업육성, 글로벌마케팅인턴, 해외전시회
총사업비	'62~계속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국정과제 분리)
사업규모	-
지원조건	-
사업시행주체	민간보조(수지차보전)

2. 사업목적

- ☐ 무역진흥, 투자유치 및 투자진출, 해외 전문인력유치 업무를 수행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 1조)

3. '14년 예산 내용

-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① 해외지사화사업 : 12,155백만원
(=사업비 18,401백만원 - 자체수입 6,246백만원)

- (사업내용) 해외무역관에 지사화 전담직원을 채용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지사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

* 시장조사, 거래선 발굴, 협상에서 수출 성사에 이르기까지 A-Z까지 지원하고
'00년 이후 13년 현재까지 중소기업 19,197개사 참여, 수출성약 79억불 기록

② 중소·중견기업 글로벌기업 육성사업 : 9,155백만원
(=사업비 16,655 - 자체수입 7,500)

- (사업내용) '참가업체-KOTRA 전문위원-해외무역관'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제품과 시장 유형, 수출 성숙도 등에 따라 기업별 해외마케팅 로드맵 수립 지원 및 목표시장 진출, 시장점유율 향상 등을 위한 맞춤형 패키지 서비스 제공

* 현지 거점 및 유통망 구축, 현지 단독 IR 및 신제품 설명회 개최,
타깃 글로벌기업과의 공동 R&D 추진 등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
* 중기청 『월드클래스 300』 지정업체 및 KOTRA 자체선정 기업 대상

③ 글로벌마케팅인턴사업 : 1,800백만원
(=사업비 1,800 - 자체수입 0)

- (사업내용) 한국기업의 해외사업장, 교포기업 등 수요 기업에 6개월간 파견하여 무역실무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인턴 종료 후 현지 취업 유도

* 고졸, 지방대, 다문화 가정, 취약계층 등의 참여율 확대를 통해
스펙초월 글로벌 취업연계 사업 기반 구축

④ 해외전시회 지원 : 17,471백만원
(=사업비 30,468백만원 - 자체수입 12,997백만원)

- (사업내용) 해외 유력전시회에 한국관을 구성하여 국내중소기업의 전시회 참가를 지원 (단체참가전시회 지원과 개별기업의 전시회 참가지원으로 구성)

- (단체참가) '11년 (95) → '12년 (101) → '13년 (115) 등 최근 3년간 평균 104회 지원

- (개별참가) '11년 (314) → '12년 (274) → '13년 (300) 등 최근 3년간 평균 296개사 지원

* 단체참가전시회 : 임차료, 장치비, 운송비 등 전시회 참가 직접경비의 50% 정도를 기업에 지원

** 개별참가전시회 : 업체당 600만원 한도내 임차료 및 운송비 등 직접경비 지원

□ 지원 필요성

- 기업의 글로벌화 역량에 따라 역량별 수출단계(수출준비-수출실행-현지진출) 별로 정책수요에 맞춰 패키지로 지원하고,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한 지역전문가를 양성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 중소기업수출경쟁력강화	26,345	34,000	40,581	6,581	19.4
▪ 지사화사업	9,305	11,051	12,155	1,104	10.0
▪ 중견기업글로벌육성	6,010	7,200	9,155	1,955	27.2
▪ 글로벌마케팅인턴	-	1,800	1,800	-	-
▪ 해외전시회	11,041	13,949	17,471	3,522	25.2
□ 비목(합계)	26,345	34,000	40,581	6,581	19.4
○ 민간보조(320-01)	26,345	34,000	40,581	6,581	19.4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사업 혁신을 통한 국가 신성장동력 창출지원
 - 중기지원 서비스 강화 및 신흥시장 개척 등 국가 신성장 동력 창출지원
- 국제개발협력, 지식서비스 등 신기능 사업 전문화를 통한 기능 고도화
- 통상기능 정보강화를 통한 글로벌 정보 네트워크 구축
- 무역 2조 달러 및 투자유치 500억 달러 달성 기반조성
 - 가치경영 도입을 통한 수출증대 및 투자유치 확대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3	340	지사화 111억원, 중견기업 글로벌 육성 72억원, 글로벌마케팅인턴 18, 해외 전시회 139억원
'14	406	지사화 121억원, 중견기업 글로벌 육성 92억원, 글로벌마케팅인턴 18, 해외 전시회 175억원
'15	411	지사화 126억원, 중견기업 글로벌 육성 92억원, 글로벌마케팅인턴 18, 해외 전시회 175억원
'16	411	지사화 126억원, 중견기업 글로벌 육성 92억원, 글로벌마케팅인턴 18, 해외 전시회 175억원
'17	411	지사화 126억원, 중견기업 글로벌 육성 92억원, 글로벌마케팅인턴 18, 해외 전시회 175억원

* 중기재정소요는 기재부에서 확정 한 13-17중기재정계획 기준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법률 제1059호, '62.4.24 제정)
 - * '95.8.4 개정(투자업무 추가), '03.9.29 개정(무역투자인력양성 기능추가)

○ 추진경위

- '62년 무역진흥 등을 위해 대한무역진흥공사를 설립한 이래 정부 지원
- '95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외국인투자유치', '산업기술협력지원' 기능을 추가하여 국가무역투자진흥기관(TPO)으로 출범
- '98년 외국인투자지원센터 신설 및 '99.10.26일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사무소 개설을 통한 외국인투자유치 활동 강화
- '99년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을 개시하고, 부품·소재품목, 신흥시장 등에 대한 다양한 시장개척활동을 지원
- '02년 해외지역본부제를 출범, 8개 지역본부를 설치하고 본사인력을 전진배치하여 해외 현장지원인력을 보강
- '02.11월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10년까지 세계일류상품 1천개 발굴·육성
- '03년 Invest KOREA 출범, '04년 정보조사본부, '05년 전략마케팅 본부, 고객지원본부 및 '07년 Global Korea를 각각 신설
- '03.9월 무역진흥확대회의에서 VIP게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을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보고
- '04.12월 수출경쟁력강화대책회의에서 4천억달러 시대를 위한 수출 전략의 일환으로 적극적인 해외마케팅 전략을 수립
- '06.10월 제4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의료산업 해외마케팅 서비스·정보제공 창구를 산자부로 일원화 결정
 - * KOTRA에 의료산업 해외마케팅지원센터 설치·운영
- '08.1월 중기지원체제 일원화를 신정부 국정과제로 채택
 - * VIP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 보고('08.5.16) 및 정부 방침 확정통보('09.5.30)에 따라 해외마케팅 지원활동을 KOTRA로 일원화

- '08. 4월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글로벌 전문인력유치 지원기능 수행을 위해 KOTRA 內 「Contact KOREA」 설치·운영 방안 확정
 - * '08.9 '글로벌전문인력지원센터' 개소
- '09년 대외무역법 제 8조 신설(4.22)에 따른 해외진출지원센터 설립 (10.23)
 - * 기업의 해외진출과 관련된 상담·안내·홍보·조사 등 해외진출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해외진출지원센터를 둠
- '09년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설치운영에 관한 대통령 훈령('09.10.1)
 -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를 설치('09.10.15)
- '11년 국가브랜드, 국제개발협력, 자원 및 에너지개발, 방산물자교역 지원 기능 법제화('11.3.30)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 중소기업 수출경쟁력강화	229	241	263	340	406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0년	229 (229)	()	()	()	229 (229)	()	()
'11년	241 (241)	()	()	()	241 (241)	()	()
'12년	263 (263)	()	()	()	263 (263)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10년 지경위 국정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후속 조치

○ KBC 파견제도의 수출유관기관 위주로 운영 필요

- 수출유관기관 대상 파견을 확대 운영 중('09년 유관기관 직원 비중 46.4%→'11년 53%)

- 사내복지근로기금 출연 및 집행의 적정성 확보
 - 사내복지기금 출연 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편법 급여인상이나 추가 성과급 재원 등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기금운용 관리를 강화하였음
- 자체수입 확대 방안 마련 필요
 - 외부협력사업 개발을 통해 자체수입 확대('09년 501억원→'10년 577억원)

□ '11년 지경위 국정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후속 조치

- 외주컨설팅 용역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
 - 외주컨설팅 용역 증가에 따라 불요불급한 외주컨설팅 자제, 용역 결과보고서 활용도 제고를 위해 '11년 1월 관련 지침을 기 시행 중. 이후 용역 시행 사전·사후 관리 대폭 강화
- 정부와 공공기관의 해외사무소 통합을 통한 운용 방안 강구
 - 유관기관 파견/입주 수용을 위한 관련 지침 개정, 수요조사 실시
- 해외출장 업무 관련, 항공사 마일리지 활용도
 - 2010년 이후 항공 마일리지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일몰 미사용을 소화 한편, 공무 목적 출장에 우선 사용 중. 상용 마일리지 사용에 관한 내부 방침 수립, 운영 중

□ '12년 지경위 국정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후속 조치

- 해외무역관에 관한 정기·수시 감사체계 등 내부통제시스템 재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시행
 - 정기적인 리스크 기반 해외 종합감사계획 수립 및 추진. 해외지역 본부별 정산교육 추진
- 해외지사 현지채용 직원의 승진체계 및 복리후생 등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 마련
 - 현지채용직원의 승진체계 및 복리후생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통한 현지직원 역량강화방안 수립 완료('12.12.27)
- 고졸자 및 여성인력 등의 채용 확대방안을 강구
 - 고졸 인사관리제도 정비를 통해 고졸 인력 채용 중. 여성간부 배출, 여성 무역관장 발탁 등으로 양성평등 조직 실현을 구현 중이며, 이를 위해 여성 채용 또한 확대

(4) 사업추진절차

-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국고 보조금 예산(매년 4-5월) → 지경부 예산심의 및 조정(6월) → 기획재정부 예산심의 및 조정(7-8월) → 국회 심의·조정(10월) → 차년도 국고 보조금 예산 확정 → 차년도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예산 편성(11-12월) → 사업집행(연중) → 사업종료 후 결산(차년도 1분기) → 산업통상자원부 결산 심사(차년도 1분기) →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차년도 1분기) → 국회결산 심사 및 확정(차년도 3분기)

(5)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무역보험기금출연(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무역보험기금출연	30,000	250,000	140,000	△110,000	△44.0

* 사업코드 : 19 - 11 - 0 - 110 - 113 - 1100 - 1138 - 881

* 담 당 자 : 무역정책국장(남기만), 수출입과장(조영태), 사무관(우혜영)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69년 ~ 현재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10,630억원('12년말 기금조성액)
지원조건	출연
사업시행주체	한국무역보험공사

2. 사업목적

☐ 무역보험 지원을 통한 수출경쟁력 확보

-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금융) 지원 및 플랜트 등 해외 대형 프로젝트 수주지원, 기금건전성 제고를 위한 기금 출연

3. '14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예산: 140,000백만원
- 산출근거
 -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접지원 확대
 - 플랜트, 자원개발 등 해외 유망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확대
 - 기금건전성 제고를 통한 무역보험기금의 대외신인도 제고

□ 지원 필요성

- 세계 경기침체 지속 및 환율급락 등으로 수출기업의 경영여건이 크게 악화되어 무역보험·무역금융을 통한 수출안전망 구축 필요
 -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수출환경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 지원정책을 통한 수출경쟁력 확보가 필수
 - * 중소·중견기업 직접지원 비중(조원): ('13) 35.9 → ('14) 38.0
- 발전·플랜트 등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는 수출자(시공사)의 금융조달력이 중요한 관건으로 작용
 - 무보는 보증을 통한 무역금융 지원으로 금융기관의 자금공여에 확실한 담보장치를 제공하며 수출자의 자금조달에 큰 기여
 - * 중장기성 보험 지원규모(조원): ('13) 15.3 → ('14) 20
- 글로벌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무역보험지원 확대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누적으로 기금배수가 급등하여 기금건전성 악화
 - * 기금배수(배) : ('09) 50.7 → ('10) 78.3 → ('11) 90.3 → ('12) 91.4
 - 무역보험 지원확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수출기업의 수주경쟁력 저하가 우려되어 기금확충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 무역보험기금출연	30,000	250,000	140,000	△ 110,000	△ 44.0
▪ 무역보험기금출연	30,000	250,000	140,000	△ 110,000	△ 44.0
☐ 출연금	30,000	250,000	140,000	△ 110,000	△ 44.0
○ 출연금(350)	30,000	250,000	140,000	△ 110,000	△ 44.0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중소·중견기업의 부족한 담보력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수출환경을 조성하여 수출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에 기여

* 중소·중견기업 직접지원 비중(조원): ('13) 35.9 → ('17) 51.0

- 리스크관리 강화 및 기금출연 확대를 통해 기금배수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여 기금의 대외신인도 향상에 주력

* 기금배수(배): ('12) 91.4 → ('17) 60배수 내외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3	2,500	무역보험 지원 확대 및 대규모 해외프로젝트 수주지원, 무역보험기금 기금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부 출연
'14	1,400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 지원 및 대규모 해외프로젝트 수주지원, 무역보험기금 기금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부 출연
'15	1,000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 지원 및 대규모 해외프로젝트 수주지원, 무역보험기금 기금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부 출연
'16	500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 지원 및 대규모 해외프로젝트 수주지원, 무역보험기금 기금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부 출연
'17	100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 지원 및 대규모 해외프로젝트 수주지원, 무역보험기금 기금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부 출연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무역보험법 제30조 및 제31조
 - 제30조(기금의 설치) : 무역보험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금설치
 - 제31조(기금의 조성) : 정부의 출연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며,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
- 추진경위
 - (1968년) 수출보험법 제정을 통해 정부의 수출지원 수단으로써 수출보험제도를 적극 활용
 - (1992.7월) 수출보험의 정책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독립전담기관인 한국수출보험공사를 설립하여 운영
 - (2010.7월) 수출보험법→무역보험법으로 개정, 한국수출보험공사→한국무역보험공사로 변경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 무역보험기금출연	1,500	1,000	300	2,500	1,400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기관명	시기	지적·평가내용
기획재정부	'13년	'13년 기금존치평가 : 국민경제에서 수출의 중요성 및 다른 경쟁국의 공적수출보험 운영 등을 감안 존치 필요성 인정
기획재정부	'12년	'12년 기금운용평가 우수
기획재정부	'11년	'11년 기금운용평가 양호
기획재정부	'10년	'10년 기금존치평가 : 국민경제에서 수출의 중요성 및 다른 경쟁국의 공적수출보험 운영 등을 감안 존치 필요성 인정
기획재정부	'09년	'09년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 평가 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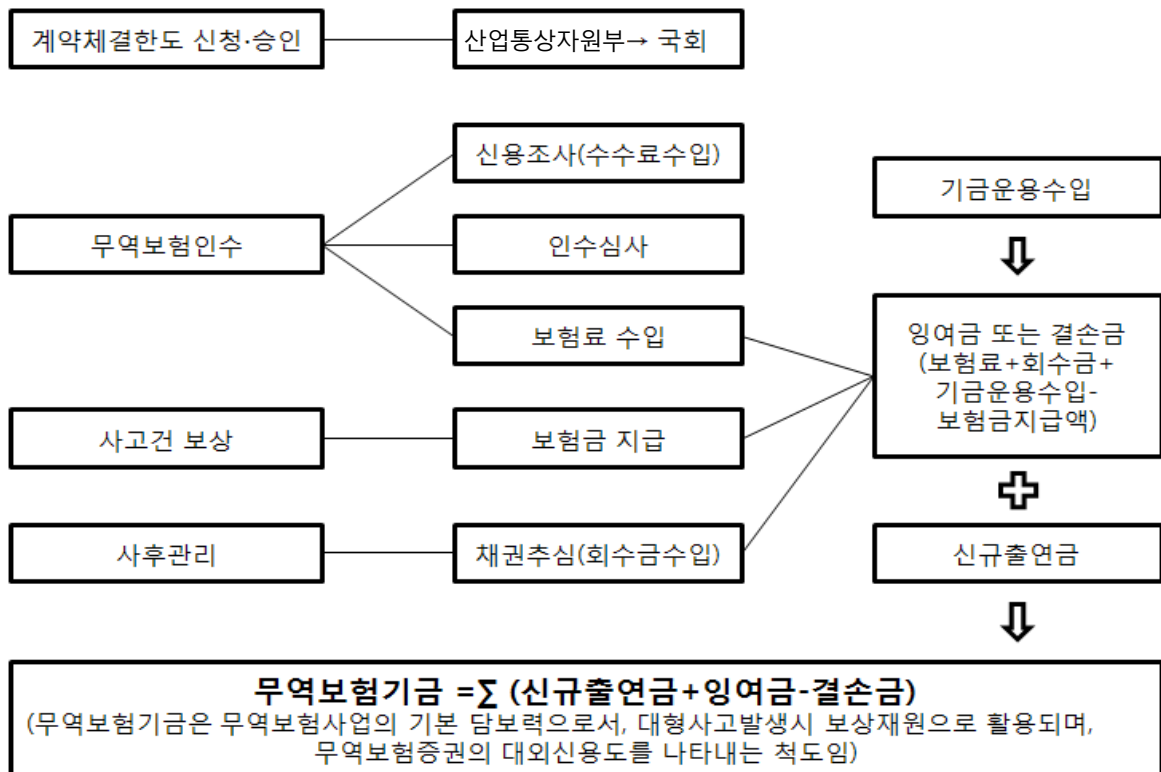
기획재정부	'08년	'08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 1위(연·기금 부문)
기획재정부	'08년	'08년 기금평가 1위(자산운용부문)
기획예산처 (기금평가단)	'07년	'07년 기금존치평가 : 수출촉진, 수출기업의 보호, 및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의 존치 필요성 인정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수출입 및 금융산업이 발전한 선진국일수록 활성화되어 있으며, 현재 64개국 75개 기관에서 운영
- 운영방식은 국가별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이 자국기업의 무역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최종 지급책임을 지는 정책사업으로 운영

정부부처 형태로 운영	영국, 스위스, 뉴질랜드
전담 공기업 운영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이탈리아, 스페인 등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7) 총사업비 관리

- 해당사항 없음

6. 참고자료

- 별첨: 해당 법·시행령·시행규칙 등 조문내용

< 별 첨 >

무역보험법 관련 조항

제1조(목적) 이 법은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무역보험의 종류) 무역보험의 종류는 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5조의2(보험금 등의 지급) 공사는 보험사고 또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 청구나 보증채무의 이행 청구에 따라 보험금 또는 대위변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의3(보험대위 등) ① 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험의 목적 또는 무역보험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할 수 있다.

② 보험금을 지급받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그 무역보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채권을 회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체결한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무역보험계약 체결(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출신용보증계약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계약의 체결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품·소재신뢰성보험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한도를 정한다. 다만, 대금결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연불(中長期延拂)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무역보험은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의 범위에서 그 한도를 따로 정하여야 한다.

제30조(기금의 설치) 무역보험사업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무역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1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제33조(기금의 운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금융기관에 예입(預入)
2. 국채·지방채 또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의 매입
3. 금융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한 유가증권의 매입
4. 제2호와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제34조의2(채권의 발행 등) ① 공사는 보험금 또는 대위변제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금의 부담으로 무역보험기금채권(이하 이 조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채권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 ④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제35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 기금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과 보험료·회수금·이자,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및 공사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을 그 수입으로 한다.

- ② 기금은 보험금·이자 및 공사의 운영경비와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그 지출로 한다.

제36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기금을 결산하여 이익금이 생기면 모두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결산하여 손실금이 생기면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補填)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제53조(업무) ① 공사는 무역보험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무역보험(환율 변동과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을 포함한다)
2. 수출신용보증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
3. 기금의 관리 및 운용
4.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6. 그 밖에 정부가 위탁하는 업무

② 공사는 신뢰성 보장사업으로서 부품·소재의 신뢰성 상실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이하 이 조에서 "부품·소재신뢰성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수출(무역보험계약이 체결된 수출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대외 거래에서 발생한 수출자 등의 대외채권에 대한 추심(推尋) 업무를 그 수출자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추심업무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보험 중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의 적용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⑤ 공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보험 중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이 재정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중장기적으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출신용보증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과 제2항에 따른 부품·소재신뢰성보험의 운영에 관하여는 무역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통합무역정보서비스 기반구축(계속, 정보화)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통합무역정보서비스 기반구축	1,200	1,150	1,737	587	51.0

* 사업코드 : 21-11-00-110-113-1100-1144-301

* 담 당 자 : 무역정책관(남기만), 무역정책과장(권오정, 044-203-4020), 사무관(임경섭, 044-203-4024)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1 ~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해당 없음
지원조건	민간보조
사업시행주체	한국무역협회

2. 사업목적

☐ 국가별로 상이한 FTA 및 인증, 규격, 기술장벽 등 무역정보를 통합, 품목별로 분류·제공함으로써 기업의 무역정보 접근성 제고

- 관세, 원산지 표시, 인증, 규격, 기술장벽, 환경규제 등 시장 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HS6단위(국제공통) 품목별로 DB화
- 산재되어 있는 무역에 관한 정보를 연계하여 한 곳에서 손쉽게 볼 수 있도록 Single-Window 방식의 온라인 시스템 구축

3. '14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국가별·품목별 통합무역정보 DB 구축 : 565백만원

* 일본, 터키에 수출시 필요한 관세, 수입규제, 환경규제, 인증 및 표준 등의 정보를 국가별·품목별(HS 코드별)로 DB화

- 일본, 터키에 대한 무역정보 조사 : 100백만원

업무	업무별 가중치	해당 여부	총업무 가중치	업무 난이도	난이도 결정	난이도 계산
소요제기	6.3	6.3	25.5	조직규모	0.6	0.89856
타당성 분석	7.2			업무처리유형	1.6	
경영전략수립	7.2			사용자참여도	1	
정보구조 정의	6.4	6.4		기존시스템	1.3	
기술현황 분석	6.6	6.6		현장방문요구	0.8	
정보관리조직분석	6.4			업무의 특수성	1	
시스템구축전략수립	6.2	6.2		수행기간	1	
제안 요청서 작성	6.3			사용양식의 수	0.9	
컨설팅지수 계산	25.5 x 0.89856 = 22.91328					
공수(해당연도)	5,530,124원					
직접경비	-					
정보전략계획 수립비	5,530,124원 x (22.91328) ^{0.95} +10,000,000원= 118,347,219					
소요예산	100,000,000					

- 일본, 터키에 대한 무역정보 DB 구축 : 200백만원

구분	산출내역					금액
	기술등급	M/M	금액/일	일	계	
직접 인건비	기술사	0	391,473	21.4	0	74,389,674
	특급	4	349,279	21.4	29,898,282	
	고급	3	254,917	21.4	16,365,671	
	중급	3	207,710	21.4	13,334,982	
	초급	4	172,789	21.4	14,790,738	
	총 M/M	14			74,389,674	
제경비	(직접인건비) * 110%					81,828,642
기술료	(직접인건비 + 제경비) * 20%					31,243,663
부가세	(직접인건비 + 제경비+기술료) * 10%					18,746,198
소 계						206,208,177
소요예산						200,000,000

- 기 구축된 무역정보 DB* 업데이트 : 265백만원

* 미국, 인도, 아세안(10개국), 중국, 대만, 홍콩

구분	산출내역					금액
	기술등급	M/M	금액/일	일	계	
직접 인건비	기술사	-	391,473	21.4	-	97,545,673
	특급	3	349,279	21.4	22,423,712	
	고급	4	254,917	21.4	21,820,895	
	중급	7	207,710	21.4	31,114,958	
	초급	6	172,789	21.4	22,186,108	
	총 M/M	20			97,545,673	
제경비	(직접인건비) * 110%					107,300,240
기술료	(직접인건비 + 제경비) * 20%					40,969,182
부가세	(직접인건비 + 제경비+기술료) * 10%					24,581,509
소 계						270,396,604
소요예산						265,000,000

○ 통합무역정보시스템 구축 : 422백만원

- 일본·터키 무역정보 화면추가 및 연계기관 확대에 따른 시스템 개발
- 체계적 정보전달을 위한 화면개편, 사용자 Needs에 맞는 신규 서비스 개발

공정구분	기능점수 단가	기능점수		보정계수				개발원가
				규모	형태	품질	언어	
분석	94,511	신규	648	0.922	1.00	1.1	-	62,118,183
설계	119,382	재개발	-				-	78,464,866
구현	159,177	재개발보정	-				1.12	117,174,936
시험	124,357	총점수	648				1.12	91,542,895
개발금액 = (개발원가 + 이윤(개발원가의 10%)) × 1.1(VAT)								422,654,064
소요예산								422,000,000

○ 해외시장정보 연계 강화 : 350백만원

- 해외시장정보제공기관의 정보 분류, 연계방식 결정·구현, 분류된 정보의 DB 구축

공정구분	기능점수 단가	기능점수		보정계수				개발원가
				규모	형태	품질	언어	
분석	94,511	신규	550	0.922	1.00	1.1	-	51,711,180
설계	119,382	재개발	-				-	65,319,212
구현	159,177	재개발보정	-				1.12	97,543,969
시험	124,357	총점수	550				1.12	76,206,207
개발금액 = (개발원가 + 이윤(개발원가의 10%)) × 1.1(VAT)								351,844,487
소요예산								350,000,000

○ 통합 해외시장정보 검색 서비스 추가 : 400백만원

- 통합된 해외시장정보의 정보검색 편의성 및 서비스 활용성 강화를 위한 검색 서비스 추가

* 빅데이터 기술 도입으로 트렌드 분석, 이용자 형태분석을 통한 연관검색서비스 및 맞춤정보 제공

- 웹 수집기 솔루션 1식 : 45백만원
- 텍스트 마이닝 및 트렌드 분석솔루션 : 90백만원
- 자동분류 솔루션 1식 : 60백만원
- 정보추천 솔루션 1식 : 50백만원
- 시스템 구축 : 155백만원(10M/M)

□ 지원 필요성

- 최근 FTA 및 인증, 표준, 기술규제(TBT) 등 국가별로 상이한 무역 정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
 - 특히, FTA 체제에서는 상호 호환성이 없는 수많은 무역규범과 새로운 경쟁 양태로 인해 무역에 필요한 정보의 양이 급증
- 이러한 정보의 수준과 양은 개별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게 되어 국비 지원이 불가피
 - 정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은 복잡한 무역 규정에 적응하지 못하여 스파게티 볼 효과*에 매몰될 가능성 상존
 - * 여러 나라와 FTA 체결시 국가별 다른 원산지 규정, 통관절차, 표준 등의 확인에 시간과 인력이 더 소요되어 거래비용 절감이라는 당초 기대효과 반감
- 현재 제공되는 무역에 관한 정보도 분야별로 분산되어 있고, 국가별·품목별로 정리·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은 트레이드 내비가 유일
 - 유관기관에서 제공 중인 정보를 취합·연계하여 기업 편의성을 제고하고, 사업 효과를 극대화

<참고 : 통합무역정보서비스와 관세청(FTA포털) 제공 정보 비교>

구분	FTA 상대국 정보											
	세울				내국 세울	원산지 기준	수입 법령	규격	라벨	안전 기준	형식 승인	수입 요건
	기본	양허관세	FTA협정	탄력								
관세청	○	×	○	×	×	○	×	×	×	×	×	×
통합무역 정보	○	○	○	○	○	○	○	○	○	○	○	○

♣ 정보 취합의 근거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7조(무역정보의 유통 촉진) ②.....관계 행정기관 및 무역통상과 관련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무역정보를 제출하게 하거나 이들에게 무역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기업들의 무역정보 취득의 애로는 무역실무 능력을 떨어뜨리고 결국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수출기업 대상 「FTA활용 준비실태조사*」에서도 우리 기업들은 FTA에 관한 사항 이외에 품목별·국가별 무역정보의 종합 제공 요구
 - * 중소기업의 FTA에 대한 준비실태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 방문조사 및 설문조사 실시('09.12~'10.4)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 통합무역정보서비스 기반구축	1,200	1,150	1,737	587	51.0
▪ 통합무역정보 DB구축	1,000	900	565	△335	△37.2
▪ 통합무역정보 시스템 구축	200	250	422	172	68.8
▪ 해외시장정보 연계강화	0	0	350	350	-
▪ 통합해외시장정보 검색 추가	0	0	400	400	-
□ 비목(합계)	1,200	1,150	1,737	587	51.0
○ 민간경상보조(320-01)	1,200	1,150	1,737	587	51.0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우리나라와 교역 비중을 고려 연차적으로 국가별·품목별로 해외 시장진출에 필요한 무역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 수출기업에 제공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3	1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무역정보 DB 구축 (중국, 대만, 홍콩, 브라질, 러시아) : 600백만원 · 기존DB Update : 300백만원 · 통합무역정보시스템 구축 : 250백만원
'14	17.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무역정보 DB구축 : 565백만원 · 통합무역정보 시스템 구축 : 422백만원 · 해외시장정보 연계 강화 : 350백만원 · 통합 해외시장정보 검색 서비스 추가 : 400백만원
'15	17.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무역정보 DB구축 : 560백만원 · 기존DB Update : 355백만원 · 통합무역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470백만원 · 해외시장정보 연계 강화 : 352백만원
'16	17.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무역정보 DB구축 : 560백만원 · 기존DB Update : 355백만원 · 통합무역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470백만원 · 해외시장정보 연계 강화 : 352백만원
'17	17.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무역정보 DB구축 : 560백만원 · 기존DB Update : 355백만원 · 통합무역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470백만원 · 해외시장정보 연계 강화 : 352백만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4조(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및 시행기관) 및 제7조(무역정보의 유통 촉진)

□ 법률 제4조(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및 시행기관)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반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업(이하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1~2. 생략

3. 무역거래에 관한 정보 및 통계(이하 “무역정보”라 한다)의 수집·분석 및 유통 촉진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이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법률 제7조(무역정보의 유통 촉진)

- ① 정부는 무역정보의 원활한 공급·활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정보의 공급·활용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및 무역통상과 관련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무역정보를 제출하게 하거나 이들에게 무역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사항에 관한 무역정보의 경우에는 미리 관세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무역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유통

2. 무역정보의 유통 촉진 등 무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

3. 무역정보망의 구축·운영

○ 추진경위

- 무역의 날 「수출 저변확대를 위한 선진 무역인프라 확충전략」
(‘09.11.30) VIP보고 시 「FTA활용지원계획」 보고
- 「제18차 FTA국내대책위원회」(‘10.7.19, 기재부·지경부 등 6개
부처 합동)시 「FTA 상대국 통합무역정보시스템 구축계획」 보고
- 2011 FTA EXPO (‘11.3.2-3.4) 지식경제 FTA무역정보관 부스 참
가 및 통합무역정보서비스 사업 홍보
- 사전조사 및 전략수립 컨설팅 (‘11.5.16 ~ 8.31)
- 「국민경제대책회의」 시 「FTA활용 지원서비스 확대」 VIP 보고 (‘11. 8)
- EU 집행위와의 상호 무역정보교환 합의 (‘11.10.24)
- 1차년도 시스템 구축 (‘11.9.22 ~ ‘11.12.31)
- 제108차 비상경제대책회의(대통령 주재) 「FTA를 활용한 무역
확대방안」에 사업추진 계획 등 보고 (‘11.12.22)
- 사이트 공식오픈 및 서비스 개시 (‘12. 1. 16)
- 2차년도 시스템 구축 (‘12.5.9 ~ ‘12.12.31)
- 3차년도 시스템 구축 (‘13. 4. 1 ~ ‘13.12.31)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 통합무역정보 서비스 기반구축	-	8	12	11.5	17.37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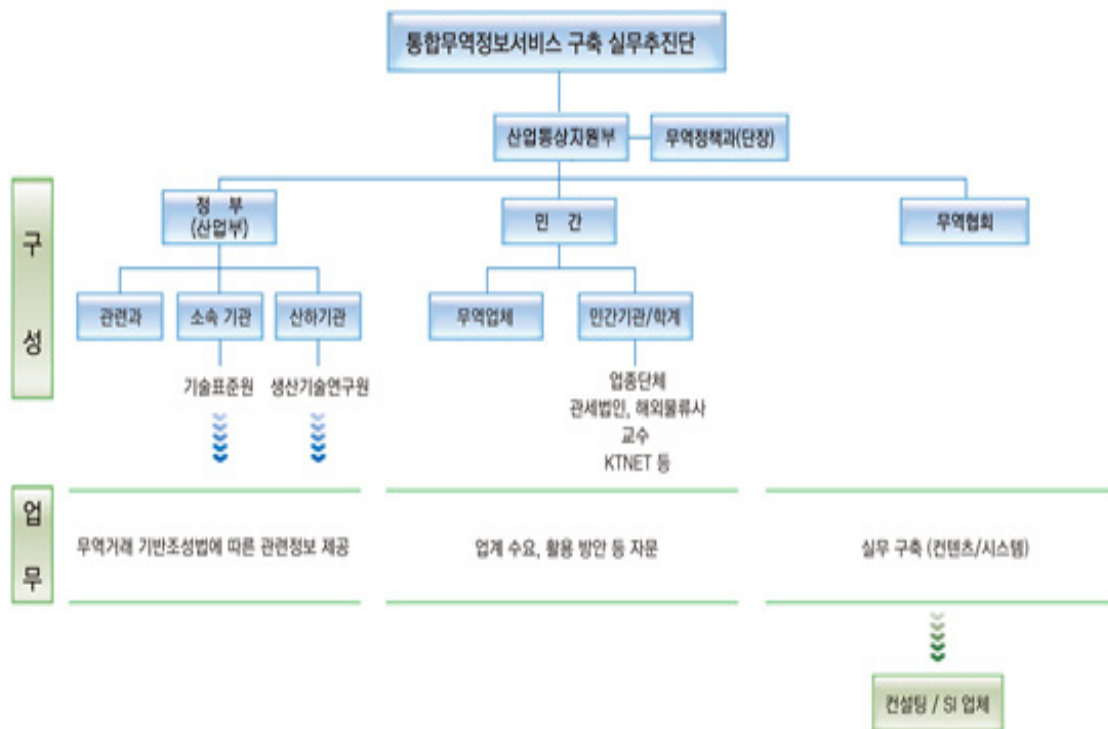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추진체계>

구분	기관명	역할
총괄기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	종합계획/사업총괄·감독
수행기관	한국무역협회	사업별 집행/관리
최종수혜자	무역업체 등	-

<사업추진 조직도>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참고1 :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 법률 제4조(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및 시행기관)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반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업(이하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1~2. 생략

3. 무역거래에 관한 정보 및 통계(이하 “무역정보”라 한다)의 수집·분석 및 유통 촉진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이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법률 제7조(무역정보의 유통 촉진)

- ① 정부는 무역정보의 원활한 공급·활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정보의 공급·활용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및 무역통상과 관련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무역정보를 제출하게 하거나 이들에게 무역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관세법」 제 241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사항에 관한 무역정보의 경우에는 미리 관세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무역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유통

2. 무역정보의 유통 촉진 등 무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

3. 무역정보망의 구축·운영

○ 사업성과 및 관련 일반통계

< 참고2: EU와의 무역정보교환 합의 >

1. 개요

- 통합무역정보서비스 구축을 위해 EU “Export Helpdesk” 서비스가 제공하고 있는 보유 무역정보 (관세율, 내국세율, 기술규제관련)와 한국 측 무역정보와의 상호교환을 추진,
- ‘11.10월 EU집행위와 상호교환에 구두 합의하였고 ‘12.6월말 산업통상자원부와 무역정보 교환 MOU 체결
- * EU의 회원국·UNCTAD외 타국과의 무역정보교환은 세계최초 사례
- ※ EU Helpdesk (<http://exporthelp.europa.eu>)
- EU가 개도국의 EU시장진입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무역정보 사이트로 통관 요건, 관세 및 내국세, 규격·인증·라벨링 등 기술규제정보, 무역통계 등을 제공

2. 추진경위

- ‘11.7.19 : EU집행위 무역총국과 1차 면담 (브뤼셀)
- ‘11.9.1 : EU집행위 2차 면담 (브뤼셀)
- ‘11.9.21 : 주한EU대표부 면담 (서울)
- ‘11.10.24 : EU집행위 3차 면담 (브뤼셀) : 무역정보교환 합의
- ‘12.5 : 지경부와 EU집행위 협약서 작성
- ‘12.6.28 : 지경부와 EU집행위 무역정보교환 협약 체결

3. 주요 교환 정보

구 분		세부 요청 정보	정보원
對EU 제공요청 정보 (EU→한국)	관세율	기본관세율 (EU 공통 적용) · 양허관세율 (수출국별 개별 적용) · 특혜 또는 비 특혜 할당관세	EU Help Desk Import Tariff Section
	수입관련 요구사항 및 내국세	EU 수입통관 과정상의 절차적 요구사항 (예 : 제출 서류 등)	EU Help Desk Requirement and Taxes Section
		내국세율 (EU 회원국별 개별 적용) 제품별 법적 또는 시장 요구사항	
對EU 제공정보 (한국→EU)	수입관련 요구사항 및 내국세	수입통합공고	외부 용역업체 활용 (무역협회 부담)
	내국세	내국세율	
	관세율	관세율(한-EU FTA 양허세율 등 포함)	

4. 기대효과

- 공신력 있는 EU 정보의 적시 확보 가능
 - 27개국 개별정보까지 포괄하고 있는 Export Helpdesk 정보를 적시에 확보, 자유롭게 번역 등 활용할 수 있어 상업DB 또는 자체구축 대비 정보의 질적·양적 측면에서 최고수준의 정보 확보가능
- 비용절감
 - 동일 유형의 해외상업DB를 구매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나, EU와의 정보교환 시 업데이트 비용만 소요되어 예산절감 효과가 지대
 - EU와의 정보교환을 위해 구축한 자료는 2~4차년도 구축대상인 미국, 인도, 아세안, 중국, 일본 등 타 국가와의 정보교환 시에도 활용 가능

※ 참조 : 상업DB 구매비용 (1차년도 기준)

- ☐ 세율정보 : EUR 112,000(D사)
 - 제공정보 : 관세율/내국세율/FTA 특혜세율 등 세율정보 (27개국 개별)
- ☐ 규제정보 : EUR 43,000(5개국, E사)
 - 제공정보 : 시장진입을 원하는 수출자가 제품을 디자인 및 제조하는 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하는 EHS분야 규제정보 (영문)

※ 참조 : 통합무역정보서비스 페이지뷰 및 방문자수

구분	페이지뷰		방문자수	
	총 합계	일평균	총 합계	일평균
2013년(1. 1~12.31)	1,730,065	4,739.9	473,778	1,298.0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산업마케팅지원(제주)(계속)

< 광특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지역산업마케팅지원(제주)	300	270	379	109	40.4

* 사업코드 : 21-39-3-110-114-3300-3361-303

* 담 당 자 : 무역정책관(남기만), 무역진흥과장(황병소, 044-203-4030), 주무관(이경은, 044-203-4036)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7~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지자체보조(국비 50% 매칭)
사업시행주체	제주특별자치도

2. 사업목적

- 지역수출산업 해외마케팅 지원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역량강화 및 수출증대

3. '14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199백만원
 - 산출내역: {공동 358백만원(6회, 42개사) + 개별 40백만원(8개사)}
× 지자체보조 50%

- 무역사절단 파견: 100백만원
 - 산출내역: 200백만원(3회, 20개사) × 지자체보조 50%
-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 개최: 70백만원
 - 산출내역: 140백만원(1회, 44개사) × 지자체보조 50%
- 해외시장조사, 지사화 지원: 10백만원
 - 산출내역: 20백만원(20개사) × 지자체보조 50%

□ 지원 필요성

-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촉진을 위한 각종 마케팅 지원사업 추진으로 수출역량 함양 및 수출증대 도모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촉진하고 수출품목과 수출국가를 다변화하여 수출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및 제주산업발전에 기여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 지역산업마케팅지원(제주)	300	270	379	109	40.4
▪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125	120	199	79	65.8
▪ 무역사절단 파견	125	70	100	30	42.9
▪ 상담회 개최	50	70	70	-	-
▪ 해외지사화 지원	-	10	10	-	-
□ 비목(합계)	300	270	379	109	40.4
○ 자치단체 경상보조(330-01)	300	270	379	109	40.4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제주지역 중소기업의 수출촉진을 위한 각종 마케팅 지원사업 확대를 통한 수출역량 함양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촉진하고 수출품목과 수출 국가를 다변화하기 위하여 해외 마케팅지원 확대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3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전시회: 120백만원(4회, 28개사) ○ 무역사절단 : 70백만원(2회, 15개사) ○ 수출상담회 : 70백만원(1회, 44개사) ○ 지사화 등: 10백만원(20개사)
'14	3.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전시회: 199백만원(공동 6회 42개사, 개별 8개사) ○ 무역사절단 파견: 100백만원(3회, 20개사) ○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 개최: 70백만원(1회, 44개사) ○ 지사화 등: 10백만원(20개사)
'15	3.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전시회: 199백만원(공동 6회 42개사, 개별 8개사) ○ 무역사절단 파견: 100백만원(3회, 20개사) ○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 개최: 70백만원(1회, 44개사) ○ 지사화 등: 10백만원(20개사)
'16	3.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전시회: 199백만원(공동 6회 42개사, 개별 8개사) ○ 무역사절단 파견: 100백만원(3회, 20개사) ○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 개최: 70백만원(1회, 44개사) ○ 지사화 등: 10백만원(20개사)
'17	3.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전시회: 199백만원(공동 6회 42개사, 개별 8개사) ○ 무역사절단 파견: 100백만원(3회, 20개사) ○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 개최: 70백만원(1회, 44개사) ○ 지사화 등: 10백만원(20개사)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대외무역법 제4조(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 추진경위
 - 지역산업 수출마케팅 강화대책(산업자원부, 04.2)
 - 수출유관기관 제주 유치 등 사업지원 체계 구축
 - 통상진흥 추진계획 수립(제주특별자치도, 매년)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 지역산업마케팅 지원(제주)	3	3	3	2.7	3.8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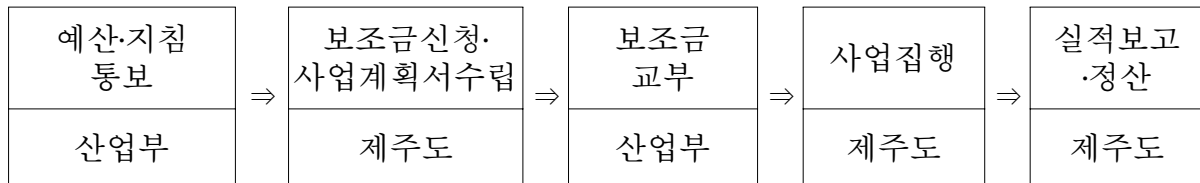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3 (3)	()	()	3 (3)	3 (3)	()	()
'12년	3 (3)	()	()	3 (3)	3 (3)	()	()
'13년	2.7 (2.7)	()	()	2.7 (2.7)	2.7 (2.7)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 해당없음

투자정책관

투자정책관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감 (B-A)	
					%
<일반회계>	2,350	2,755	2,755	-	-
○ 해외진출기반구축 (1933-301)	2,250	2,555	2,555	-	-
○ 남북산업자원협력 (1934-301)	100	200	200	-	-
<광특회계>	97,318	161,924	148,441	△13,483	△8.4
○ 투자유치기반조성 (4901-302)	97,258	161,117	147,634	△13,483	△8.4
○ 투자유치기반조성정보화기반구축 (4901-303)	60	57	57	-	-
○ 투자유치기반조성(제주) (4902-301)	-	750	750	-	-
【 합 계 】	99,668	164,679	151,196	△13,483	△8.4

일 반 회 계

해외진출기반구축(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해외진출기반구축	2,250	2,555	2,555	0	0

* 사업코드 : 21-11-0-110-113-1900-1933-301

* 담 당 자 : 투자정책관(김창규), 해외투자과장(송요한, 044-203-4090), 주무관(박재은, 044-203-4095)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6년~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민간경상보조(100%)
사업시행주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 사업목적

- ☐ 해외투자진출 역량이 취약한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성공적 해외 투자 및 현지 정착을 위한 해외투자 환경기반 조성·지원

3. '14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운영 :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현지 법률·세무·노무·경영 등 애로사항 해결 및 지원을 통해 성공적 현지 정착 및 내수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 사업비 1,205백만원

*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13년 상반기 현재 10개국 15개소 운영 중

- 해외진출지원센터 운영 : 투자진출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해외투자 상담·컨설팅 제공 등을 통한 해외진출 애로사항 해소 지원을 위한 사업비 220백만원
- 해외진출정보시스템 운영 :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세계시장 전망, 투자여건 모니터링 등 실시간 해외투자 정보 제공(31개 유관기관 정보 통합 제공) 서비스 사업비 160백만원
- 중소기업 해외 M&A 지원센터 운영 : 중소기업이 해외 우수기업의 경영자원(기술, 고객망, 브랜드 등)을 활용하기 위한 해외 M&A를 활성화함으로써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비 810백만원
- 글로벌 기업과 연계한 해외진출 지원 : 글로벌 기업과 공동으로 해외진출 희망 기업발굴, 기술컨설팅, 마케팅 및 해외 VC유치 등을 통한 국내 유망 기술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사업비 160백만원
 - * 산출내역 : 기업발굴 10백만원(사업공고·선정), 기술·마케팅교육 50백만원(50개사), 기업홍보 40백만원(20개사), 현지창업 지원 60백만원(6개사)
 - * 국정과제 15. 청년 창업·취업활성화 및 해외진출 지원 「①대한민국 청년이 세계를 움직이는 K-Move(공약 26번)」의 이행과제인 ‘해외 벤처 창업기업의 창업비용, 글로벌 기업과 연계한 해외진출 등 지원’ 연계사업

□ 지원 필요성

- 중소기업의 시장확대를 위한 해외시장 진출,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해서는 해외진출이 필수적이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해외 네트워크 구축·정보수집·해외 경영환경 변화 대응 등을 위한 독자적·자율적인 추진 역량에 한계가 있음
 - * 해외진출기업 애로사항 조사결과(그랜드서베이, KOTRA, 매년), 해외진출 기업은 정부차원의 관련정보 제공 및 애로사항 해소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호소
 - * ‘10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실태와 정책과제보고서’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목적으로 ‘해외시장진출’을 66.3%, 관련애로로서는 ‘해외시장진출 관련 정보부족’을 38.3% 지적

- 중소기업이 성공적인 해외투자진출 및 현지에 정착 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해외투자환경기반을 조성하고 지원할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 해외진출기반구축	2,250	2,555	2,555	-	-
▪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운영	1,200	1,205	1,205	-	-
▪ 해외진출지원센터	250	240	220	△20	△8.3
▪ 해외진출정보시스템	200	180	160	△20	△11.1
▪ 중소기업해외 M&A 지원센터	-	850	810	△40	△4.7
▪ 글로벌 기업 연계 해외진출지원	-	-	160	160	순증
▪ 해외투자진출지원역량강화	-	80	-	△80	순감
▪ 해외M&A활성화 및 전략수립	320	-	-	-	-
▪ 해외프로젝트진출 지원	200	-	-	-	-
▪ FTA 투자활용센터 운영	80	-	-	-	-
☐ 비목(합계)	2,250	2,555	2,555	-	-
○ 민간경상보조(320-01)	2,250	2,555	2,555	-	-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해외투자진출 역량이 취약한 우리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해외투자 및 현지 정착을 위한 정보 및 컨설팅 제공을 통한 해외투자 지원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3	25.6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12.1), OIS시스템(1.8), 해외진출지원센터(2.4), 중소기업 해외 M&A지원센터(8.5), 해외투자진출지원역량강화(0.8)
'14	25.6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12.1), OIS시스템(1.6), 해외진출지원센터(2.2), 중소기업 해외M&A지원센터(8.1), 글로벌기업 연계 해외진출 지원(1.6)
'15	25.6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12.1), OIS시스템(1.6), 해외진출지원센터(2.2), 중소기업 해외M&A지원센터(8.1), 글로벌기업 연계 해외진출 지원(1.6)
'16	25.6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12.1), OIS시스템(1.6), 해외진출지원센터(2.2), 중소기업 해외M&A지원센터(8.1), 글로벌기업 연계 해외진출 지원(1.6)
'17	25.6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12.1), OIS시스템(1.6), 해외진출지원센터(2.2), 중소기업 해외M&A지원센터(8.1), 글로벌기업 연계 해외진출 지원(1.6)

* 중기재정소요는 기재부에서 확정 한 13-17중기재정계획 기준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대외무역법 제7조 및 제8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0조 및 제13조

□ 대외무역법 제7조 및 제8조

제7조 ② (중략) 통상진흥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략)

3. 무역·통상 협상 추진방안과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방안

제7조 ④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외에 진출한 기업에 (중략)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④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의 해외진출과 관련된 상담·안내·홍보·조사와 그밖에 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해외진출 지원센터를 둔다.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0조 및 제13조

제10조 ① 공사는 (중략)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6. (중략)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지원

제13조 정부는 공사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해외진출기업의 애로사항 및 대책 보고(VIP 대책마련 지시, '03.9.23, 제50회 국무회의, '03.11.18)

- '05.4월 : 선진통상국가 추진과제 중 하나로 '글로벌 네트워킹 촉진 방안' 보고
- '06.11월 : VIP께서 청와대 수보회의, 인니방문 등에서 우리기업의 종합적·전략적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범국가적 전략마련 지시
- '06.12월 : 경제정책수석주재 관계부처 회의(12.15) 및 수보회의(12.19)를 거쳐,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기관이 참여하는 T/F 구성
- '07.2.28 : 범부처 차원의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방안" 발표
- '07.2월 : 최종적으로 경제정책수석 및 경제부총리 주재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부처협의를 완료하고 지원방안을 VIP께 보고
- 설치근거 마련을 위한 대통령 훈령(안) 제정추진('07.4월~, 관계부처 의견 수렴 완료)
- 「해외진출기업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196호, '07.9.20)에 의거, '07.10.19일 설치
- '07.12월 : 해외진출정보시스템 VIP 시연회('07.6.20)후 공식 오픈
- '08.11월 : 해외진출 관련 대외무역법 일부개정(안) 제출 ('해외진출에 대한 정보 수집'과 '해외진출지원센터 설치' 등)
- '09.10월 : 대외무역법 시행(10.23)에 따라 KOTRA에 '해외진출지원센터'를 설립
- '10.11월 : 「G20시대 무역정책방향」中 '중소중견기업 해외투자 진출 지원인프라 강화' 방안 발표(대통령, 무역투자진흥회의)
- '12.12월 : 해외 M&A 활성화 대책 발표(대외경제장관회의)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 세부사업명	27	25	22.5	25.6	25.6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12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 보통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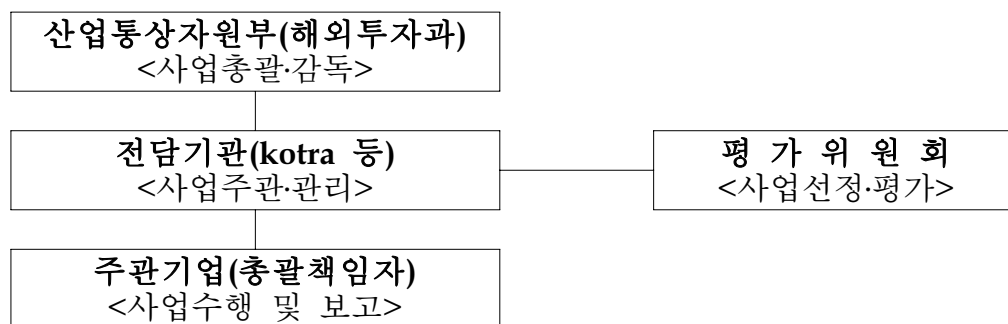
- 전액 정부출자 특수법인인 일본무역진흥회(JETRO)를 통하여 57개국 78개소 사무소 운영하고, 각 현지사무소 내 투자팀을 통하여 지역전문가를 통한 현지투자상담, 지역투자설명회, 투자가이드 및 현지투자리포트 발간 등의 사업을 진행.

이외에 On-line matching 서비스인 TTPP(Trade Tie-up Promotion Program)사업, LL(Local to Local)사업을 수행

- 국제협력은행(JBIC)를 통해 해외 M&A 등 해외투자기업에 대해 10조엔 규모의 특별융자를 지원 중

(5) 사업추진절차

○ 해외진출기반구축 사업 기본체계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 해당없음

남북산업자원협력(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남북산업자원협력	100	200	200	-	-

* 사업코드 : 21 - 11 - 0 - 110 - 113 - 1900 - 1934 - 301

* 담 당 자 : 투자정책국장(김창규), 남북경협팀장(전제구, 044-203-4062), 주무관(조아영, 044-203-4066)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8~ 계속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사업규모	해당사항 없음
지원조건	민간경상보조(100%)
사업시행주체	(사)한국무역협회

2. 사업목적

- 남북한 경제협력 및 대북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 산업·자원분야의 협력방안 모색 및 개성공단의 안정적 가동을 위한 입주기업 등 남북경협기업 지원

3. '14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남북경협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 120백만원

- 개별기업 맞춤형 마케팅 활동(홍보책자 발간, 홈페이지 개설, 전시회 참가 등) 지원(45백만원)

* 15개사×3백만원=45백만원

- 남북경협기업 대상 무역실무 교육 실시(5백만원)
 - * 2회×2.5백만원=5백만원
- 개성공단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등(70백만원)
 - *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2회×25백만원=50백만원
 - *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5개사×4백만원=20백만원
- 남북경협 정책연구 및 기반구축 지원 : 80백만원
 - 남북산업자원혁신 포럼운영* 및 전문가 간담회** 개최(30백만원)
 - * 유관기관 포럼 운영: 6회×3.33백만원=20백만원
 - ** 전문가 간담회 개최: 4회×2.5백만원=10백만원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축, 개성공단 국제화 등 관련 정책연구(5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에 대비한 남북 산업자원 협력방안 등을 모색하여 향후 남북경협 활성화의 기반 마련 필요
-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 남북경협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판로 개척·마케팅활동 등을 지원하여 기업경쟁력 제고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 남북산업자원협력	100	200	200	-	-
▪ 남북경협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40	108	120	12	11.1
▪ 남북경협 정책연구 및 기반구축 지원	60	92	80	△12	△13
□ 비목(합계)	100	200	200	-	-
○ 민간경상보조(320-01)	100	200	200	-	-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남북산업자원협력 기반을 지속적으로 조성하여 남북경협기업의 투자·교역 확대 유도
- 대북진출기업에 대한 경영·마케팅 활성화 지원 및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남북산업자원협력의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조사, 전문가 포럼운영 등을 통해 남북경협기업이 적극적으로 가치창출을 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3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경협기업 마케팅 지원(1.08) ○ 유관기관 포럼 운영 및 전문가 간담회 개최(0.12) ○ 남북경협관련 연구조사(0.8) 등
'14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경협기업 마케팅 지원(0.45), 무역실무 교육(0.05) ○ 개성공단 국제경쟁력 제고 위한 설명회 개최 등(0.7) ○ 유관기관 포럼 운영 및 전문가 간담회 개최(0.3) ○ 남북경협관련 연구조사(0.5) 등
'15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경협기업 마케팅 지원(0.45), 무역실무 교육(0.05) ○ 개성공단 국제경쟁력 제고 위한 설명회 개최 등(0.5) ○ 유관기관 포럼 운영 및 전문가 간담회 개최(0.3) ○ 남북경협관련 연구조사(0.5) ○ 대북투자정보시스템 운영(0.2) 등
'16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경협기업 마케팅 지원(0.45), 무역실무 교육(0.05) ○ 개성공단 국제경쟁력 제고 위한 설명회 개최 등(0.5) ○ 유관기관 포럼 운영 및 전문가 간담회 개최(0.3) ○ 남북경협관련 연구조사(0.5) ○ 대북투자정보시스템 운영(0.2) 등
'17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경협기업 마케팅 지원(0.45), 무역실무 교육(0.05) ○ 개성공단 국제경쟁력 제고 위한 설명회 개최 등(0.5) ○ 유관기관 포럼 운영 및 전문가 간담회 개최(0.3) ○ 남북경협관련 연구조사(0.5) ○ 대북투자정보시스템 운영(0.2) 등

* 중기재정소요는 기재부에서 확정 한 13-17중기재정계획 기준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남북교류·협력의 지원)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에 따라 행하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개성공업지구의 개발에 대한 지원) ①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원활한 조성 및 운영 등을 위하여 자금지원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한반도경제 구상」(’06.6월 국무회의) 보고시 산업자원부 등 경제부처의 경협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일반예산 투입 필요성 제기
- ’08.3월, 남북산업자원협력 기반조성사업 수행기관으로 무역협회 지정
- ’08.4월, 남북산업자원혁신 포럼 시작
- ’08.11월, 북한상품 홍보전 개최(12개 업체 참석)
- ’09.4월, 개성공단 및 남북교역상품 홍보전 개최(14개 업체 참석)
- ’10년, 개별기업 8개사 5개 전시회 참가 지원 등
- ’11년, 개별기업 6개사 6개 전시회 참가 지원 등
- ’12년, 개별기업 10개사 7개 전시회 참가 지원 등
- ’13년, 개별기업 14개사 마케팅활동 지원, 5개사 공동전시회 참가 지원 등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남북산업자원협력	1.8	1.12	1	2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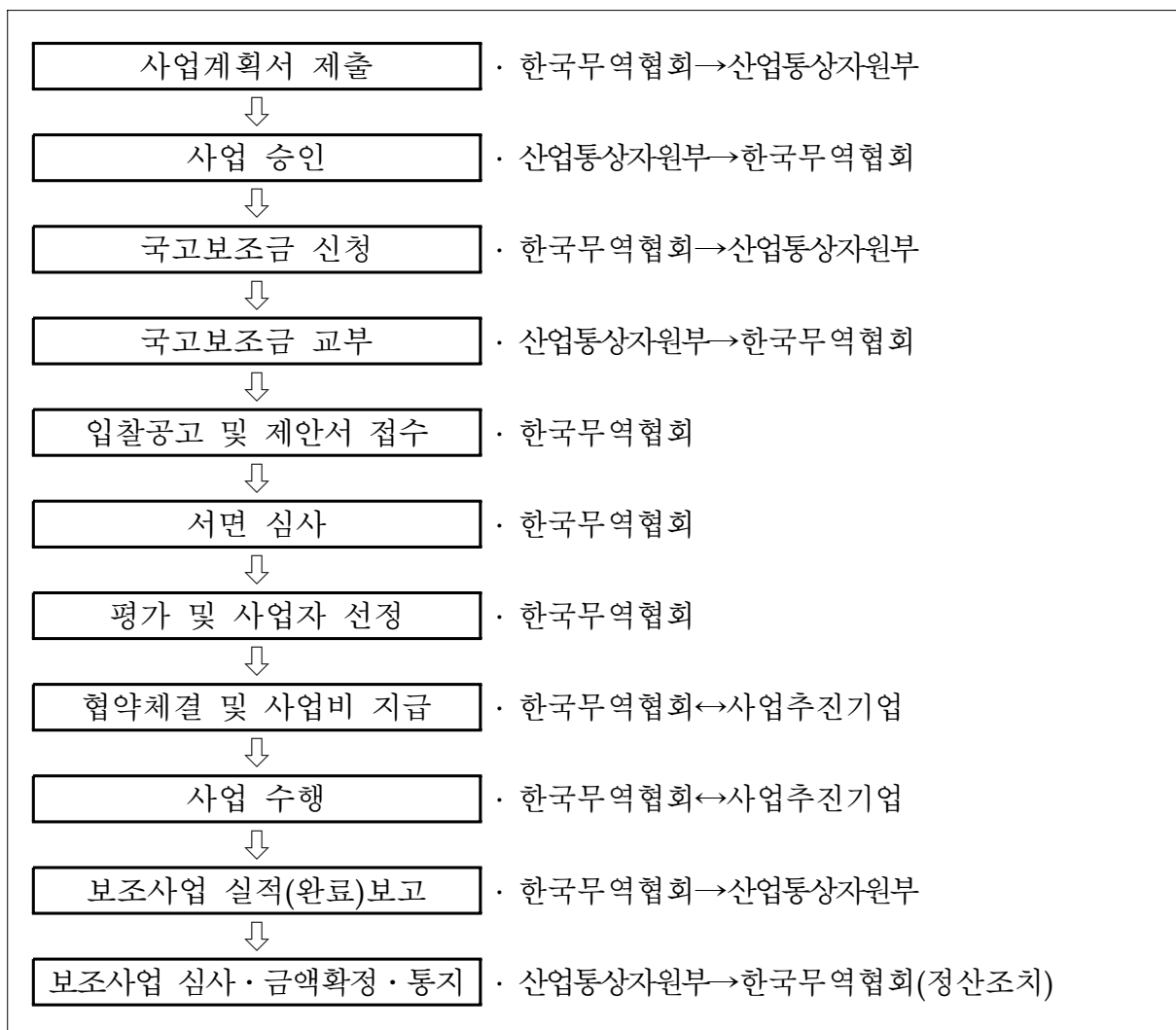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12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 보통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 없음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투자유치기반조성(계속)

< 광특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투자유치기반조성	97,258	161,117	147,634	△13,483	△8.4

* 사업코드 : 21-235-02-110-114-4900-4901-302

* 담당자 : 투자정책관(김창규), 투자정책과장(변영만, 044-203-4070), 주무관(박형진, 044-203-4076)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0~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민간보조(국고 100%)
사업시행주체	KOTRA

2. 사업목적

-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투자재원 확보, 첨단기술 도입, 수출증대 및 일자리 확보, 산업기반 고도화 및 지속적 경제성장에 기여

3. '14년 예산 내용

□ 예산내역 및 산출근거

- 부지매입비 : 기지정 및 신규지정 등 16개 외투자지역 부지임대를 위한 토지매입비 **118,154백만원**
 - 산출내역 : 16개 지역 × 7,385백만원

〈부지매입비 소요 전망〉

(단위 : 천㎡, 억원)

구 분	면적	매입가			연도별 국비집행 및 소요					
		총소요	국가	지자체	'12까지	'13	'14	'15	'16	'17이후
기지정단지	3,076	9,027	5,196	3,831	1,521	1,138	870	680	574	413
향후지정계획	1,428	3,354	2,080	1,274	-	2,160	312	502	480	570
합 계	4,504	12,381	7,276	5,105	1,521	1,354	1,182	1,182	1,054	983

- * 선지정 후정산 방식 : 외국인투자지역을 먼저 지정하여 일괄계약후, 부지매입은 외국인투자기업 입주시 입주면적 만큼씩 매입 ('04 도입)

○ 현금 지원(Cash Grant) : 기 체결된 현금지원 계약(4건)과 신규계약 (5건)의 지원금액 **19,507백만원**

- 산출내역 : 2013년 이전 계약 4건 9,000백만원 + 2014년 신규 계약 5건 10,507백만원

< 지원대상 및 용도 >

- 지원대상 : 고도기술 수반사업, 부품소재, 대규모 고용창출사업, R&D 연구시설
- 지원용도 : 토지, 건물 매입비, 임대비, 건축비, 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 지원금액 : 협상을 통해 FDI 금액의 일정비율 지원

○ 투자유치활동비 : 외국인 투자주간 행사(FIW), 해외 IR, 투자가 초청 등 투자유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비 **8,944백만원**

- 산출내역 : 6개 분야 × 1,490백만원
- * 기반조성(행사, 홍보, 포럼 등), 프로젝트(상품화, 유망프로젝트 발굴 등), 유치 단파견(해외IR), 환경개선(채용박람회, 원스톱서비스 등), 유치지원(차이나 데스크, 투자정보시스템 운영 등)

○ 연구용역비 : 투자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300백만원**

- 산출내역 : 50백만원 × 6개 과제

○ 국내복귀기업지원 : U턴기업 등록제도, U턴기업 지원센터, 해외 U턴기업 지원데스크 운영 등 **729백만원**

- 지원센터 : 249백만원, 지원데스크 : 80백만원 × 6개

구 분	'13예산	'14예산
□ 투자유치기반조성	161,117백만원	147,634백만원
▪ 부지매입비	지원 대상 및 대상 확대 (11 → 15개지역)	지원대상 확대 (15 → 16개지역)
▪ 현금지원	5개사	9개사
▪ 투자유치활동비	투자유치활동 지원	일본 및 중국, 중동 등 신흥자본국 유치활동 지원 확대
▪ 외국인학교건립	2개 학교	-
▪ 외국인학교운영	2개 학교	-
▪ 연구용역비	정책연구용역	정책연구용역
▪ 국내복귀기업지원	지원센터 및 데스크 설치 운영	지원센터 및 데스크 설치 운영

□ 지원 필요성

- 외국인투자는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도기술 유입 및 약 14,000여개 외투기업이 고용창출 및 수출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
 - * 약 14,000여개 외투기업이 437,986명 고용(이 중 제조업 고용은 247,487명)
 - * 외투기업의 국민경제 비중은 총 수출의 11.6 %, 총 부가가치의 9.8 %('10년)
- 유럽 재정위기 등 어려운 글로벌 경제여건 속에서 일자리 창출 및 혁신기반 확충 등에 필요한 양질의 FDI 유입 등 역할확대 필요
- 국내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대규모 프로젝트 유치 및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 건설을 견인하는 양질의 FDI 유치 필요
 - 시장확대, 관세인하 등 FTA 효과 및 국제 환경변화를 활용, 집중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를 통해 투자중심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

< 세 부 내 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 투자유치기반조성	97,258	161,117	147,634	△13,483	△ 8.4
▪ 부지매입비	73,258	135,354	118,154	△17,200	△12.7
▪ 현금지원	14,000	14,000	19,507	5,507	39.3
▪ 투자유치활동비	6,340	7,474	8,944	1,470	19.7
▪ 외국인학교건립	2,600	3,200	-	△3,200	순감
▪ 인프라설치지원	-	-	-	-	-
▪ 고용및훈련보조	80	-	-	-	-
▪ 외국인학교운영비	60	60	-	△60	순감
▪ 연구용역비	200	300	300	-	-
▪ 국내복귀기업지원	-	729	729	-	-
☐ 세출예산비목(합계)	97,258	161,117	147,634	△13,483	△ 8.4
○ 연구개발비(260-00)	200	300	300	-	-
○ 민간경상보조(320-01)	6,340	8,203	9,673	1,470	17.9
○ 민간자본보조(320-07)	14,000	14,000	19,507	5,507	39.3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860	60	-	△60	순감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2,600	3,200	-	△3,200	순감
○ 토지매입비(410-00)	73,258	135,354	118,154	△17,200	△12.7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고도기술 수반 및 고용창출 효과가 큰 전략적 프로젝트 유치 확대
- 선진국과 신흥자본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투자유치활동 추진
- 외투기업의 애로해소 및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투자환경 개선
- 현금지원 활성화를 통한 전략적 외국인투자 적극 유치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3	1,6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매입비(135,354백만원), 현금지원(14,000백만원) ○ 투자유치활동비(7,474백만원), 외국인학교건립(3,200백만원) ○ 연구용역비(300백만원), 외국인학교운영(60백만원) ○ 국내복귀기업지원(729백만원)
'14	1,4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매입비(118,154백만원), 현금지원(19,507백만원) ○ 투자유치활동비(8,944백만원), 연구용역비(300백만원) ○ 국내복귀기업지원(729백만원)
'15	1,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매입비(71,554백만원), 현금지원(19,507백만원) ○ 투자유치활동비(8,944백만원), 연구용역비(300백만원) ○ 국내복귀기업지원(729백만원)
'16	1,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매입비(71,554백만원), 현금지원(19,507백만원) ○ 투자유치활동비(8,944백만원), 연구용역비(300백만원) ○ 국내복귀기업지원(729백만원)
'17	1,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매입비(71,554백만원), 현금지원(19,507백만원) ○ 투자유치활동비(8,944백만원), 연구용역비(300백만원) ○ 국내복귀기업지원(729백만원)

* 중기재정소요는 기재부에서 확정 한 13-17중기재정계획 기준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3조 (국공유재산 등의 임대 및 매각) ①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공장 또는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이 조 및 제14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에게 사용·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제14조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할 용지 매입비의 용자,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및 분양가액 인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하거나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할 수 있도록 그 감면분(감면분) 또는 분양가액과 조성원가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교육훈련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외국인투자유치사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고도기술수반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에게 공장시설의 신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94. 1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개정
 - *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제도 도입(부지매입, 분양가차액지원 방식)
- '98. 11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
 - * 외국인투자지역 제도 도입(부지매입 방식)
 - * 각종 지원제도 도입(분양가차액보조, 인프라설치지원, 고용 및 훈련보조)
- '03. 9 : 「외국인투자종합대책」 수립(국무회의 보고)
- '03. 12 :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 * 현금지원(Cash Grant)제도 도입, PM제도(Project manager) 도입
- '04. 4 : 「지자체의 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
- '05. 1 : 외국인투자유치사업중 지자체보조사업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
- '09. 5 : 외국인투자유치사업(일반,균특)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사업재편
- '09. 9 : 사업명을 “외국인투자유치”에서 “투자유치기반조성”으로 변경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 투자유치기반조성	757	712	973	1,611	1,476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0년도

- 불용 : 투자유치활동비 1.9억원, 고용및훈련보조 2.3억원

○ '11년도

- 불용 : 고용및훈련보조 5.7억원, 외국인학교운영 30백만원, 용역비 3백만원

○ '12년도

- 불용 : 고용및훈련보조 2.7억원, 외국인학교운영 60백만원
- 이월 : 연구용역 27백만원
- 전용 : 현금지원 40억원을 토지매입비로 전용하여 집행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0년	757 (757)	()	- ()	757 (757)	753 (753)	- ()	4 (4)
'11년	712 (712)	()	()	712 (273)	706 (706)	()	6 (6)
'12년	972 (972)	()	±40 (±40)	972 (972)	968 (968)	0.2 (0.2)	2.7 (2.7)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10년 재정사업자율평가 : 우수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싱가포르 지원 사례

- 경제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규모 투자는 투자진흥 담당기관인 경제개발청(EDB)이 개별 투자건마다 비공개로 결정

○ 중국의 지원 사례

- 중앙정부에서 경제개발구등의 재정수입에 대하여 상납 면제 및 기 납부된 재정수입의 반환조치 등을 통하여 재정보조를 실행하고 있으며, 개발구는 이러한 재정보조를 이용하여 개발구내 외자기업에 대하여 납부한 세금의 일정액을 반환해 주는 등 보조금 지급

○ 아일랜드 지원사례

- 아일랜드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아일랜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Package로 지원 결정

(5) 사업추진절차

- | |
|--|
| <p>○ 외투자지역 지정 요청(지자체) → 외투자지역 지정 결정(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의결) → 토지매매계약(국가, 지자체, 소유주) → 부지매입비 예산지원(국비, 지방비)</p> <p>○ 현금지원 신청(외투기업) → 현금지원 결정(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의결) → 현금지원계약(국가, 지자체, 외투기업) → 현금지원 예산지원(국비, 지방비)</p> |
|--|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투자유치기반조성정보화기반구축(계속)

< 광특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투자유치기반조성정보화기반구축	60	57	57	-	-

* 사업코드 : 21-235-02-110-114-4900-4901-303

* 담 당 자 : 투자정책관(김창규), 투자정책과장(변영만, 044-203-407), 주무관(박형진, 044-203-4076)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0~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민간보조(국고 100%)
사업시행주체	KOTRA

2. 사업목적

-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G4F) 제공 등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정보화기반구축

3. '14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G4F 시스템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비용 57백만원 확정

- 세부산출내역

구분		수량	도입비용	유지보수비용 (연간)	비 고
H/W	Web 서버	1	30,000,000	14,496,000	도입비용의 연 12%
	AP/DB 서버	1	45,000,000		
	송수신 서버	1	18,800,000		
	디스크 스토리지	1	20,000,000		
	L2 스위치	2	7,000,000		
WAS	WebTob	1	5,000,000	2,944,000	도입비용의 연 10%
	JEUS	1	24,444,444		
DB	Oracle 10G	1	80,000,000	1,452,000	도입비용의 연 2~3%
DB보안	Chakra(웨어벨리)	1	30,000,000	2,400,000	도입비용의 연 8%
리포팅도구	Rexpert	1	15,000,000	-	-
소 계		11	275,244,444	21,292,000	
운영관리	인건비	1	25,800,000	35,708,000	중급기술자*
조정 합계				57,000,000	(월)4,750,000

* 2013년 SW노임단가표상 중급기술자 기준, 업무량 1/3MM 적용(하드웨어 및 백업운영 포함)

□ 지원 필요성

- G4F 시스템은 지경부·법무부·노동부 공동으로 구축한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Government for Foreigners, www.hikorea.go.kr)”로서 산업부 소관 투자유치 부분의 지속적인 유지보수 및 개선 필요
- 또한, 동 시스템내 투자유치 프로젝트 관리시스템(Investment Project Management System) 운영을 통한 투자유치 활성화 제고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 투자유치기반조성	60	57	57	-	-
▪ G4F 운영관리	60	57	57	-	-
- H/W, S/W 유지보수		24	21	△3	△1.3
- 운영관리(인건비)		33	36	3	9
□ 세출예산비목(합계)	60	57	57	-	-
○ 민간경상보조(320-01)	60	57	57	-	-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G4F 시스템 투자유치 부분의 지속적인 유지 보수 및 개선
- 외국인투자활성화를 위한 정보화기반구축 수요를 반영한 관련 시스템 개발·운영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2		
'13	0.57	G4F 시스템 유지보수 (기 확정예산 산출근거)
'14	0.57	G4F 시스템 유지보수 (상기 검토안 산출근거)
'15	0.57	G4F 시스템 유지보수
'16	0.57	G4F 시스템 유지보수
'17	0.57	G4F 시스템 유지보수

* 중기재정소요는 기재부에서 확정 한 13-17중기재정계획 기준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전자정부법 제16조

제16조(전자정부서비스 개발·제공)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국민의 복지향상 및 편익증진, 국민생활의 안전보장, 창업 및 공장설립 등 기업활동의 촉진 등을 위한 전자정부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가 손쉽게 전자정부서비스에 접근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공되는 전자정부서비스는 최신의 것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를 개발·제공할 때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의 요구사항 및 편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 추진경위

- 산자부·법무부·노동부 공동으로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Government for Foreigners(G4F), www.hikorea.go.kr)” 구축

* '03년 행자부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로 선정

* '06.8월 G4F 1차사업 완료 (기반구축)

* '08.2월 G4F 2차사업 완료 (확대·고도화) 및 각 부처로 전산자산 이관

- G4F 유지보수 및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정보화기반구축 필요성에 따라 '10년 신규사업으로 추진

< 예산 반영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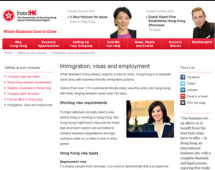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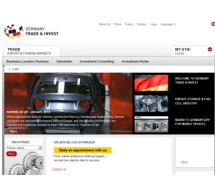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투자유치기반조성 정보화기반구축	1	0.6	0.6	0.57	0.57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국가명	운영기관	사이트주소	제공하는 정보내역	사이트이미지
일본	JETRO	http://www.jetro.go.jp/en/inve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뉴스 - 인센티브 프로그램 - 기업경영정보 (비자, 조세, 인사, 법규제 등) - 입지정보 	
홍콩	Invest HK	http://www.investhk.gov.hk/index.htm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경영정보(비자, 인사, 회계 등) - 홍콩에서 살아가기 - 산업정보 	
싱가포르	EDB	http://www.edb.gov.sg/content/edb/en.htm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뉴스 - 산업정보 - 투자성공사례 - 기업경영정보 (비자, 기업등록절차, 인사, 조세 등) 	
호주	Austrade	http://www.austrade.gov.au/Inve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가이드 (비자, 투자절차, 법인설립절차, 기업운영, 정부지원프로그램 등) - 투자성공사례 	
영국	UKTI	http://www.ukti.gov.u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경영정보 (금융, 인센티브, 법규제, 조세, 인사 영국 비즈니스 환경, 법인설립절차, 정부지원 등) 	
독일	GTAI	www.gtai.d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정보 - 투자컨설팅 - 투자가이드 (비자, 법인설립절차, 조세, 인사 인센티브 프로그램, 사회보안시스템 등)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6. 참고자료 : 해당없음

투자유치기반조성(제주) (계속)

< 광특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투자유치기반조성(제주)	-	750	750	-	-

* 사업코드 : 21-39-3-110-114-4900-4902-301

* 담 당 자 : 투자정책관(김창규), 투자유치과장(전윤중, 044-203-4080), 사무관(김석, 044-203-4084)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9~ 계속
총사업비	-
사업규모	-
지원조건	지자체보조(국고 75%, 제주특별자치도 25%)
사업시행주체	제주특별자치도

2. 사업목적

-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의 증가하고 있는 관광객 추세를 외국인투자 유치와 연계할 수 있도록 종합휴양관광지 기반조성을 지원하여 관광·레저 분야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를 도모함

3. '14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투자유치기반조성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투자지역 기반 시설 지원을 위한 사업비 750백만원 요구(외국인투자유치 기반시설 1식)
 - 산출내역('13년 동일) : 100백만원(1년차 사업비) × 75%(국가보조율)

□ 지원 필요성

- 제주지역 외국인투자기업의 기본인프라 지원으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여 일자리 확보, 산업기반 고도화 및 지속적인 경제성장 도모
- 중국 관광객을 위한 관광단지 사업 본격추진에 따른 진입로 확·포장으로 원활한 공사추진과 향후 교통수요에 대응
- 본 사업은 최초로 중국인 투자자가 참여하는 개별형 외국인투자 관광단지 조성 사업으로 본 사업의 성패가 향후 중국 기업의 對韓 투자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표사업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 투자유치기반조성(제주)	-	750	750	-	-
○ 인프라설치지원 - 외투자지역 진입로 확포장사업	-	750	750 (1식×1,000백만× 75%)	-	-
□ 세출예산비목(합계)	-	750	750	-	-
○ 자치단체자본보조(330-3)	-	750	750	-	-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제주는 사람·상품·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고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외국인 투자 및 경영활동 지원으로 국제자유도시 기반 마련
- 최근 제주의 중국인 관광객 급증 추세를 외국인투자유치와 연계하기 위하여 「종합휴양관광지」 기반조성을 지원하여 관광·레저 분야 외국인직접투자 확대를 도모함

* 중국관광객유치 : ('09)258천명 → ('10)406천명 → ('11)570천명
→ ('12)1,084천명 → ('13)1,500천명(목표)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2		
'13	7.5	· 외투자지역 진입도로 및 상하수도 인프라설치 지원
'14	7.5	· 외투자지역 진입도로 및 상하수도 인프라설치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에 의거 국가75%, 제주특별자치도 25% 부담)
'15	-	
'16	-	
'17	-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①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임대할 용지 매입비의 용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및 분양가액 인하, 교육훈련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의 지급, 그밖에 외국인투자 유치사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0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기준 등)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원하는 자금지원의 기준은 고용창출 및 기술이전 등 외국인투자가 가져오는 국민경제적 효과와 입주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6조**(지원항목 및 비율) 4.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 의거 지정된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해 다음 각목의 조성 및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하여 수도권외의 경우 100분의 40, 기타지역의 경우 100분의 75를 지원

○ 추진경위

- '98. 11. 17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
- '05. 1 외국인투자유치사업 중 지자체보조사업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이관
- '09. 5 외국인투자유치사업(일반, 균특)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재편되면서 균특 지역개발사업계정에서 광특 제주특별자치도계정으로 분리
- '09. 9 '10년 사업명을 “외국인투자유치(제주)”에서 “투자유치기반 조성(제주)”로 변경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 투자유치기반 조성(제주)	18	10	-	7.5	7.5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2011년도 지원 예정이었던 「웨딩테마파크」사업 해외투자자(중국 천혜그룹)의 투자포기로 지원 대상 사업부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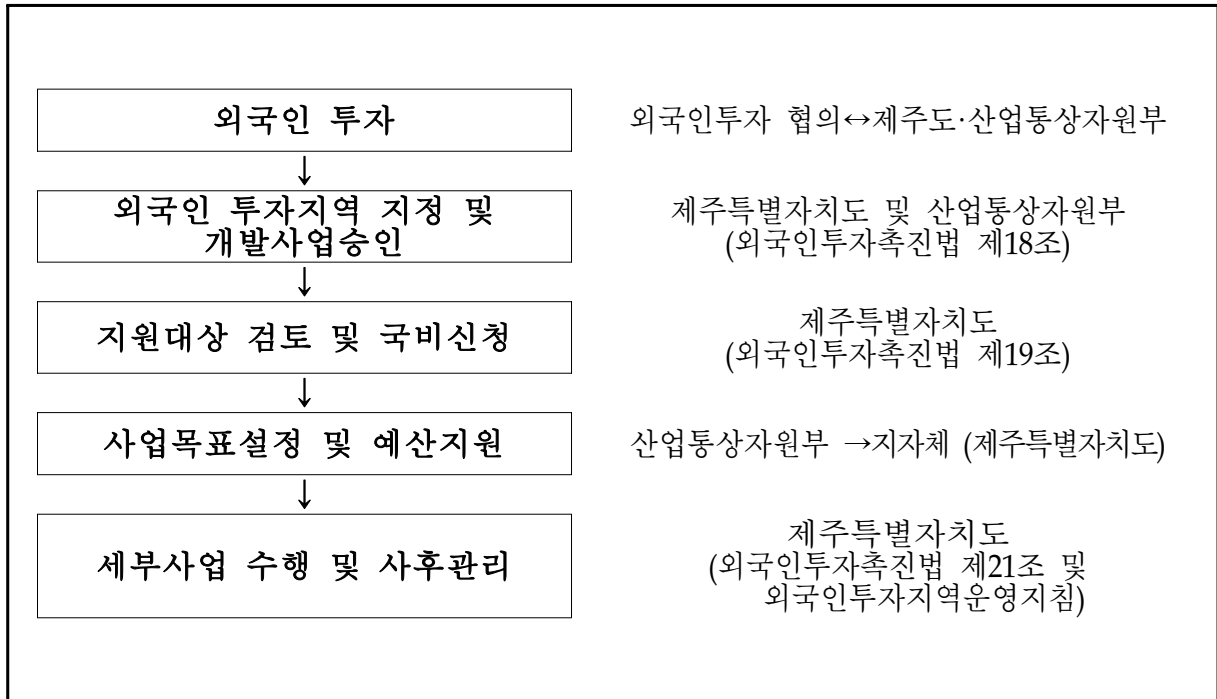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10 (10)	()	()	10 (10)	- (-)	()	10 (10)
'11년	10 (10)	()	()	10 (10)	- ()	()	10 (10)
'12년	- (-)	()	()	- (-)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 없음

통상국내대책관

일 반 회 계

통상국내대책관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감 (B-A)	
					%
<일반회계>	7,210	5,614	10,633	5,019	89.4
○통상협정 국내대책추진지원	7,210	5,614	10,633	5,019	89.4
【 합 계 】	7,210	5,614	10,633	5,019	89.4

통상협정 국내대책추진지원(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통상협정 국내대책 추진지원	7,210	5,614	10,633	5,019	89.4

* 사업코드 : 21 - 110(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 - 113(무역및투자유치부문) - 1900(해외진출활성화프로그램) - 1935(통상협정국내대책 추진지원)

* 담 당 자 : 통상국내대책관(조용만), 총괄기획과장(안병화, 044-203-4120),
사무관(임택, 044-203-4126)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2006 ~ 계속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사업규모	해당사항 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2. 사업목적

- ☐ 중소기업들이 기 체결된 FTA 관세인하 효과를 최대한 향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FTA 활용촉진사업을 지원
- ☐ 한·중 FTA, TPP, RCEP 등 선진 거대경제권과의 FTA 협정 체결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 피해산업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시행

3. '14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기업수준 및 단계별 FTA 활용 애로해소 】

① FTA 비즈니스 석사과정 지원 : ('13) 650 → ('14) 1,300백만원

- 중소기업 FTA 활용을 선도할 석사급 실무형 전문가 양성
- '14년은 사업 2년차로 석사 2개 학년($650 \times 2 = 1,300$ 백만원) 지원
- * (교육운영비) 7.2백만원(평균 등록금) $\times 60\% \times 2$ 개 학년 $\times 150$ 명(7개 대학)
= 1,300백만원

【 대학별 지원금 배정 기준 】

지원항목	지원내용	제한사항
① 사업수행 인건비	담당직원인건비 · 보직수행 경비 · 교수지도 · 장학조교비	15% 이내
② 교육과정운영비	강사료, 현장실습비, 학생장학금 등	70% 이상
③ 일반사업운영비	여비, 일반수용비, 사업평가비 등	10% 이내
④ 간접비	해당 대학(산학협력단) 간접비	5% 이내

② FTA 전문컨설턴트 양성 : ('13) 200 → ('14) 300백만원

- 무역전문 퇴직인력을 FTA 컨설턴트로 양성하여 산업현장 FTA 전문가 부족 해결
- 고용부 「중장년 희망 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하여 지원 확대 (120→160명) 및 교육과정 심화(120→150시간)
- * 160명 $\times$ 2.1백만원 $\times$ 정부지원 90%(교육비 10% 자부담) = 300백만원

< 여타 교육기관의 FTA활용관련 교육비 현황 >

구분	무역협회(아카데미)	능률협회	원산지정보원	계(평균)
과정명	FTA종합실무과정	원산지관리 실무	원산지관리 실무	
단가	18.3천원/시간	12.5천원/시간	14.5천원/시간	15.1천원

③ 대학 FTA 강좌개설 지원 : ('13) 600 → ('14) 500백만원

- 상경계 학과(경영, 무역, 국제관계, 통상 등)에 FTA 활용 정규강좌를 개설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FTA활용 실무인력 양성
- * (대학강좌개설) 25개 대학 $\times$ 2개 학기 $\times$ 10백만원 = 500백만원

④ **FTA 이터닝** : ('13) 200 → ('14) 150백만원

- FTA 종합지원 포털을 통해 FTA 기본 및 활용편(대학강의용, 기업실무자용) 3개 강좌를 운영
 - * 웹호스팅 (48백만원, 4백만원*12개월), 교육관리 대행 (42백만원, 3.5백만원*12개월) 콘텐츠 유지보수(30백만원), 신규콘텐츠 개발(30백만원)

⑤ **(수출 납품업체) 원산지확인서 발급지원** : ('14) 400백만원(신규)

-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기관*이 수출업체에 납품하는 영세 협력사에 대한 원산지확인서 컨설팅·발급 지원기능 수행
 - *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16개) 16명 × 50백만원 × 지자체 매칭 50%
 - * ‘수출 협력업체의 원산지확인서 발급부담 완화’ (5.1. 무역투자진흥회의 보고)

【중소기업 FTA 종합지원체계 마련】

⑥ **FTA무역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 ('13) 2,490→ ('14) 3,732백만원

- FTA 맞춤형 상담 및 현장 컨설팅 지원 강화
 - * “FTA 전문가를 대폭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FTA 활용관련 애로해소에 주력” (무역투자진흥회의 VIP 보고, ‘13.5.1)
- FTA 무역종합지원센터·지역 FTA센터의 관세사를 확충하여(24→50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간 2만건 이상의 전문상담 제공
 - * ('13)1,200백만원(24명×50백만원) → ('14) 2,500백만원(50명×50백만원)
- FTA 활용지원 컨설팅 확대
 - * ('13)1,200백만원(300개 중소기업×4백만원) → ('14)1,200백만원
- 컨설팅 지원업체 실무전문가 심화교육 : ('13) 90 → ('14) 32백만원

⑦ **지역FTA센터 운영 지원** : ('13) 1,700 → ('14) 1,700백만원

- 현행 16개 지역센터(15개 광역시도 설치, 서울 지원제외·경기 2개)에 지역 센터당 1억원 내외에서 지원

⑧ **FTA 통합콜센터** : ('14) 100백만원 (신규)

- 기업의 FTA 활용애로를 원스톱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통합콜센터 설치(6.24 개소)

- * 제1차 무투회의('13.5.1)시 VIP 지시사항
- * 콜센터 상담인력(8명) 인건비 : 4명 × 25백만원 (4명은 무역협회 부담)
- * 금년은 무역협회內 트레이트 콜센터에서 업무(19명)를 수행중이나 '14년부터는 FTA 콜센터 전담인력체계(8명)로 운영 전환

【FTA 활용 인프라 구축】

⑨ FTA 홍보 : ('13) 1,200 → ('14) 1,000백만원

- FTA 인지도 및 호감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수행
- * 상시홍보 700백만원(월간 FTA발행, 웹사이트 유지, 포탈검색광고 등),
계기 홍보(한·칠레 FTA 10주년 등) 300백만원

< '08~'14 FTA 홍보 예산현황 > (억원)

구분	'08	'09	'10	'11	'12	'13	'14
합 계	34	81	42	70	18	12	10
예 산	34	18	42	25	18	12	10
예비비	-	63	-	45			
비고	한미 FTA 비준	한미FTA비준 한인도, 한EU FTA타결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	한미 FTA 비준통과			

⑩ FTA 설명회 : ('13) 380 → ('14) 100백만원

- 16개 시·도 합동 FTA 관련기관 워크숍, 시·도 FTA 정책협의회,
FTA 업종별 설명회 등 : 국내설명회 ('13)15회 → ('14) 10회×10백만원

⑪ 원산지관리시스템 개발 : ('14) 600백만원 (신규)

- *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도록 주요 업종별 특화된 시스템 개발
(5.1. 무역투자진흥회의 보고)
- 업종별로 특화된 원산지관리시스템 확충*(300백만원) 및 既개발된
표준 원산지관리시스템 고도화**(300백만원)
- * (현행) 섬유업종 특화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11.5월) → (개선) 원재료
가공업체가 특히 영세하고 별도의 입증서류 관리(농지원부, 어업면허,
가공확인증명서 등)가 필요한 농식품업종 추가 구축(300백만원)
- ** 범용으로 사용 중인 표준원산지관리시스템(FTA-Korea, FTA-Pass)의
사용자 불편 해소, ERP 미보유 영세업체를 위한 간편 ERP 기능제공 등
기능 업그레이드(300백만원)

⑫ FTA본부 운영비 : ('13) 684 → ('14) 751백만원

▪ ('12) 1,061(12개월) → ('13) 684(6개월*) → ('14) 751백만원

* 정부조직개편('13.3)前 당시 한시조직인 FTA국내대책본부 6개월분 운영비만 반영

구 분	'13예산	'14예산
□ 통상협정 국내대책 추진 지원		
	<기업수준 및 단계별 FTA 활용 애로해소>	
① FTA 비즈니스 석사과정 지원	<650백만원> ▪ 7개 대학 1학년 지원 * 3.6백만원(1학기 평균 등록금)×60%×2학기×150명	<1,350백만원> ▪ 사업 2년차로 7개 대학 1·2학년 지원 (650백만원×2개 학년)
② FTA전문 컨설턴트 양성	<200백만원> ▪ 120명×120시간×15.13천원×정부 지원 90%(10% 자부담)	<300백만원> ▪ 중장년 희망 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 지원확대 (120→160명)
③ 대학 FTA강좌 개설 지원	<600백만원> ▪ 30개대학×2개학기×10백만원	<500백만원> ▪ 25개대학×2개학기×10백만원
④ FTA 이러닝	<200백만원> ▪ 유지보수·운영 : 120백만원 ▪ 신규콘텐츠 : 80백만원	<150백만원> ▪ 신규콘텐츠 개발 축소 : 80→30백만원
⑤ 원산지확인서 발급지원(신규)	-	<400백만원> ▪ 영세업체 대상 원산지확인서 컨설팅·발급 관세사 채용지원 : 16명×2.5백만원
	<원스탑 종합지원체계 마련>	
⑥ FTA무역종합 지원센터 운영 지원	<2,490백만원> ▪ FTA 컨설팅 : 1,200백만원 ▪ FTA무역종합지원센터, 지역 FTA센터 관세사 채용지원 : 1,200백만원(24명×50백만원) ▪ FTA교육 : 90백만원	<3,732백만원> ▪ FTA 컨설팅 확대 : 1,200백만원 ▪ FTA무역종합지원센터(4→10명), 지역FTA센터(20→40명) 관세사 확충 : 2,500백만원(24→50명×50백만원) ▪ FTA교육 : 32백만원
⑦ 지역FTA센터 운영지원	<1,700백만원> ▪ 16개지역센터×약110백만원	<1,700백만원> ▪ 16개지역센터×약110백만원
⑧ FTA 통합콜센터 (신규)	-	<100백만원> ▪ 콜센터 상담인력 인건비(4명×25백만원)
	<FTA 활용 인프라 구축>	
⑨ FTA홍보	<1,200백만원> ▪ FTA 상시홍보 1,000백만원 ▪ FTA 계기홍보 200백만원	<1,000백만원> ▪ FTA 상시 홍보 700백만원 ▪ FTA 계기홍보 300백만원
⑩ FTA설명회	<380백만원> ▪ 업종별 10회×7.5백만원 ▪ 지역별 5회×2.5백만원 ▪ 해외설명회 5회×56백만원	<100백만원> ▪ 업종별 5회×10백만원 ▪ 지역별 5회×10백만원
⑪ 원산지관리시스템 개발 (신규)		<600백만원> ▪ 농식품업종 시스템 개발 : 300백만원 ▪ 원산지관리시스템 고도화 : 300백만원
⑫ FTA본부 운영비	<684백만원>	<751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중소기업의 FTA 활용으로 해소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

- 기업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초보·준비·실행 단계별 FTA 활용으로 해소를 위한 종합적·체계적 지원체계 구축
- 기업의 FTA 활용역량 강화 등을 위한 제반 정책역량 집중

⇒ 최근 한·중 FTA, TPP·RCEP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 발효를 앞두고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 및 정책추진이 필요

○ 원스탑(One Stop) 종합지원 체계 마련

- ‘FTA 콜센터 1380’ 홍보 및 지원역량 강화 등 기업의 FTA 관련 궁금증 및 애로를 원스톱으로 신속히 해결
- FTA 활용지원 원스톱 서비스 지속 제공을 위한 FTA 무역종합지원센터의 총괄지원 기능* 강화

* 업종별·지역별 협의회와의 유기적 연계 및 지원을 통해 FTA 활용 애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문제해결 및 제도개선 추진

⇒ 중소기업 FTA 활용 생태계 및 원스탑 지원 플랫폼 구축

○ 중장기 FTA 활용전략 수립 및 인프라 구축

- 중소기업의 FTA 활용 실태진단을 바탕으로 상품 업종별, 서비스 분야별 중장기 활용전략 및 비전을 수립
- 기 발효된 한·미 및 협상중인 한·중 FTA 등이 중소기업의 FTA 활용 통한 해외 판로 확대와 연계되는 연결고리 강화

⇒ 시장개방에 대응한 내실있는 FTA 활용지원 수요기반 확충

◆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확대”(무역투자진흥회의 ‘13. 5월) 및 “중소 기업의 FTA 활용촉진 종합대책”(대외경제장관회의 ‘13. 6월) 이행기반 확충

< 세 부 내 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 통상협정 국내 대책 추진지원	7,210	5,614	10,633	5,019	8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수준 및 단계별 FTA 활용애로해소 	2,202 · FTA컨설팅 - · 대학강좌 404 · FTA활용박람회 1,690 · FTA이러닝 108	1,650 · FTA석사과정 650 · 대학강좌 600 · 컨설턴트 200 · FTA이러닝 200	2,650 · FTA석사과정 1,300 · 대학강좌 500 · 컨설턴트 300 · FTA이러닝 150 · 원산지확인서 발급지원 400	1,000 650 △100 100 △50 400	60.6 100 16.7 50 △25 순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스탑 지원 체계마련 	1,288 · FTA무역센터 - · 지역센터 1,288	1,700 · FTA무역센터 - · 지역센터 1,700	5,532 · FTA무역센터 3,732 · 지역센터 1,700 · 콜센터 100	3,832 3,732 - 100	225.4 순증 - 순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FTA 활용 인프라구축 	3,720 · FTA홍보 2,404 · FTA설명회 324 · 운영비 등 992	2,264 · FTA홍보 1,200 · FTA설명회 380 · 운영비 등 684	2,451 · FTA홍보 1,000 · FTA설명회 100 · 원산지관리 시스템 개발및고도화 600 · 운영비 등 751	187 △200 △280 600 67	8.3 △16.6 △73.7 순증 9.8
☐ 비목(합계)	7,210	8,104	10,633	5,019	89.4
○ 인건비(110)	155	174	82	△92	△52.9
○ 운영비(210)	6,583	4,962	4,710	△252	△5.1
○ 여비(220)	158	130	123	△7	△5.4
○ 업추비(240)	191	194	166	△28	△14.4
○ 연구개발비(260)	81	100	100	-	-
○ 민간이전(320)	13	2,516	5,432	2,916	115.9
○ 기타유형자산(430)	29	30	20	△10	△33.3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FTA를 통해 대내외 경제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 마련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2	72.03	
'13	56.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 인력양성(석사과정, 대학 FTA 등) : 16.5억원 ○ 중소기업 FTA 활용지원 : 17억원(지역 FTA 센터지원) ○ FTA 국내대책 추진 : 22.64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 홍보, FTA 설명회, 운영비 등
'14	106.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 인력양성(석사과정, 대학 FTA 등) : 22.5억원 ○ 중소기업 FTA 활용지원 : 65.32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종합지원센터, 지역 FTA 센터, 원산지관리 개발 등 ○ FTA 국내대책 추진 : 18.51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 홍보, FTA 설명회, 운영비 등
'15	35.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 e- 러닝 : 2억원 ○ 중소기업 FTA 활용지원 : 15.42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 콜센터 운영비 지원, 원산지관리 개발 등 ○ FTA 국내대책 추진 : 18.51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 홍보, FTA 설명회, 운영비 등
'16	35.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 e- 러닝 : 2억원 ○ 중소기업 FTA 활용지원 : 15.42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 콜센터 운영비 지원, 원산지관리 개발 등 ○ FTA 국내대책 추진 : 18.51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 홍보, FTA 설명회, 운영비 등
'17	35.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 e- 러닝 : 2억원 ○ 중소기업 FTA 활용지원 : 15.42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 콜센터 운영비 지원, 원산지관리 개발 등 ○ FTA 국내대책 추진 : 18.51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 홍보, FTA 설명회, 운영비 등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 20066호)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추진경위

- 2006. 8월 한·미 FTA 체결지원위원회 발족
- 2007. 5월 FTA 국내대책위원회·대책본부
- 2013. 2월 산업통상자원부로 조직이관

*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FTA에 대한 국내대책의 총괄지원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 통상협정국내 대책추진지원	86	68	70	56	106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0년	8,648 ()	132 ()	()	8,780 ()	5,585 ()	2,709 ()	474 ()
'11년	6,761 ()	2,709 ()	4,484 ()	13,954 ()	12,741 ()	667 ()	546 ()
'12년	7,018 ()	667 ()	()	7,685 ()	7,210 ()	285 ()	190 ()

* '10년 : 한·미 FTA 연말 타결에 따른 관련 홍보 및 FTA 박람회 예산 이월, 국내외여비 및 운영비 집행 절감에 따른 불용

* '11년 : FTA 홍보관련 예비비 4,484백만원 편성, FTA 홍보비 및 해외설명회 사업예산 이월, FTA 활용지원 사업정산에 따른 사업비 잔액 등 불용

* '12년 : FTA 컨설팅 및 연구용역비 이월, 운영비 집행절감에 따른 불용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2010년 국회 지적사항】

<지적내용>

- '09년 체결된 FTA(한·인도, 한·EU)와 직접 관련이 없는 FTA 상시홍보(대국민 인식제고, 보완대책 홍보 만화집 제작, 신문광고)에 예비비 집행(10억)
- FTA 체결시점 뿐 아니라 국회비준 시점을 고려한 단계적·체계적인 홍보활동 전개방안 검토 필요

<지적내용에 대한 후속조치>

- 한·인도 CEPA('09.8.7), 한·EU FTA('09.10.15) 등 주요 FTA가 타결되는 긍정적 분위기를 활용, 국민들이 FTA를 잘 이해하고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FTA 일반 및 보완대책에 대한 정책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부득이 예비비를 활용하여 집행
 - '09년 본예산 18억원은 특정 계기홍보 1건도 대응 곤란
- 지적하신 대로, 종전의 FTA 협상·서명단계 홍보와 함께, 협상개시 전 사전홍보 및 비준단계와 발효이후 FTA활용 홍보도 강화할 계획('10. 7. 19 제18차 국내대책위 보고)

【2011년 국회 지적사항】

<지적내용>

- 인건비는 36.6%, 인건비와 관련된 민간이전은 17%, 여비는 60.2%의 낮은 집행율을 보였는데, 이는 적정규모를 넘어선 과도한 예산편성으로 보임
- 운영비의 경우 예산현액 76억 5,800만원 중 34.1%에 해당하는 26억 1,3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을 철저히 편성하지 않거나, 사업추진여부를 뒤늦게 결정하거나 예산상 각목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서 적정한 예산집행이라고 볼 수 없음.

<지적내용에 대한 후속조치>

- '12년 예산은 전년대비 인건비는 30.4%, 여비는 19.1%, 민간이전은 25.7% 각각 감액하여 편성
- 예산 불용과 이월 최소화를 위해 회계 연도 중 지속적인 예산 집행 현황을 관리 감독

【2012년 국회 지적사항】

<지적내용>

- FTA홍보비의 과다편성보다는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컨설팅, 설명회, 교육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것
- FTA활용과 관련한 유사사업의 중복수행을 방지하고 각 사업간 적절한 업무분담을 통해 효율성 제고 및 예산절감을 도모할 것

<지적내용에 대한 후속조치>

-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FTA효과극대화방안 및 세부추진과제('12.3월)를 마련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각 사업별 효율화 방안을 추진
 - FTA활용지원정책협의회(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를 운영하여 세부방안 논의('13.1월 현재 20차 진행)
- 컨설팅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12.7월)하여 중복과 소외를 방지하고 기관별로 차별화된 컨설팅 제공
 - '12년부터 기업실무자 대상 FTA 교육운영 체계도 개편 : 대면·심화 교육은 지역 FTA 활용지원 센터 사업으로 단일화 하고 기본교육은 FTA 이러닝 강좌로 운영

참고 1

내역사업 주요 증감 현황

(백만원)

통상국내대책추진지원	'13예산 (A)	'14예산 (B)	증감 (B-A)	%	비고
<합계>	5,614	10,633	5,019	89.4	
① FTA 활용 애로해소	1,650	2,650	1,000	60.6	
○ FTA 전문인력 양성	1,650	2,250	600	36.3	
▪ FTA 비즈니스 석사과정 지원	650	1,300	650	600	▪ 석사과정 1→2개학년 지원 : 1,300백만원
▪ FTA 활용 전문컨설턴트 양성	200	300	100	50	▪ 중장년 일자리 창출 확대(120→140명)
▪ 대학 FTA 강좌 지원	600	500	△100	△16.7	▪ 25개대학 2개학기 지원, 취업박람회·경진대회 등
▪ FTA 이러닝	200	150	△50	△25.0	▪ 웹호스팅 등 유지관리, 신규컨텐츠 개발 축소
○ 원산지확인서발급지원	-	400	400	신규	▪ 원산지확인서 제3자확인기관의관세사 등 전문인력(8명) 채용지원
② 원스탑 종합지원체계 마련	1,700	5,532	1,342	32	
○ FTA 무역센터 지원	-	3,732	1,242	49.8	▪ FTA관세사 채용지원 확대(24→50명) ▪ FTA 컨설팅 확대(300→350개 기업)
○ 지역 FTA 센터 지원	1,700	1,700	-	-	▪ 지역 FTA센터 증설(16→18개소)
○ 통합 콜센터 설치·운영	-	100	100	신규	▪ 상담원 인건비 4명×25백만원
③ FTA 활용 인프라 구축	1,580	1,700	120	7.6	
○ FTA 활용 인식제고	1,580	1,100	△480	△30.4	
▪ FTA 홍보	1,200	1,000	△200	△16.7	▪ 상시홍보 10억
▪ FTA 설명회	380	100	△280	△73.7	▪ 국내 설명회.10회 (해외설명회 미반영)
○ 업종별 원산지관리시스템 개발 및 고도화	-	600	600	신규	▪ 농식품업종 시스템 개발(300백만) ▪ 기존 표준시스템 고도화(300백만)
④ FTA본부 운영비	684	751	67	9.7	▪ 6개월분→12개월분

